

---

#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 개선 연구

---

김명아





#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 개선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Reform for the Harmonization of  
Financial Stability and Fintech Innovation

연구자 : 김명아(연구위원)  
Kim, Myoung-Ah

2018. 10. 31.



## 연구진

연구책임	김명아 연구위원
심의위원	정 대(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기령(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인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성희활(인하대학교 교수) 윤민섭(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 최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도 중요한 금융정책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으나, “금융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 간 관계 정립에 대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적 논의가 부족함
- 효과적인 금융 정책과 규제, 감독의 이행을 발전·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별 금융당국과 국제기준 선정주체 간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는 2017년 6월 27일, 금융기술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음
- FSB의 보고서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에서 FSB는 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Fintech의 잠재적 금융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각 금융당국의 관심을 끌만한 감독 및 규제 문제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음
- 위 보고서에서는 주요 논의 분야를 10가지로 제시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육성과 함께 금융안정성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에 국제 협력의 우선 순위가 되는 3개(제3자 서비스제공 업체의 운영리스크 관리, 사이버 위험 완화, 거시금융 위험 모니터링) 분야를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법제 및 규제 정합성 확보 등에 관한 7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정책 수립에 있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내 금융안정 법제 개선 방향에 적극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2017년 6월 27일 발간된 FSB의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보고서와 같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과 규제적정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나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 또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서는 2018년 2월,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보고서를 통하여, Fintech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하여, 은행의 미래는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Fintech가 금융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정보의 역할이 중심을 이루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여, 은행의 리스크와 영업범위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과 규제방식도 빠른 속도로 진화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Fintech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의 개념을 FSB가 사용하고 있는 정의를 사용하는 한편, Fintech 혁신의 카테고리를 부문별 혁신 분야에 대한 시장 지원 서비스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Fintech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전통적인 감독이나 규제체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Fintech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부작용(공정경쟁 방해, 금융소비자를 부당한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 등)에 대하여서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에 따른 금융안정의 개념을 규제적 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의미 확장성을 모색하고, 이에 기초하여 유형별로 관련 법제들을 세부 검토함으로써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과 관련 규제 체계 간 바람직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II. 주요 내용

- ▶ Fintech 유형별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들이 장기적 시각에서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국내에서의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금융안정 관련 규제체계의 제도적 기반 변화 중요성을 제시함
  - FSB 내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금융안정에 대한 산업의 영향과 국가 간협력 강화 필요 분야 및 각국 금융당국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국내에서도 Fintech 발전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Fintech 유형별로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과 규제적정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함

- 혁신기술보유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정책과 Fintech 관련 시장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규제환류체계를 통한 소비자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안정에 관한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금융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 감독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분야 규제 원칙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분야 규제 원칙의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함
  - 현행 금융분야 규제 체계에서 적합한 네거티브 규제의 범위와 규제체계 변경 방식에 대하여 검토함
- 금융소비자의 시장 신뢰는 금융안정 평가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환류체계 확립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테스트베드의 운용시에도 관련 입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금융안정에 대하여서는 금융당국과 경제활동 주체, 금융인프라를 위주로 기능론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 금융소비자들에 대하여서는 금융시장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금융규제 원칙의 변화 가능성과 연계하여 Fintech 유형별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에 따라 각 Fintech 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기적 시각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의 금융안정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 새로운 금융서비스·상품의 출현에 따른 금융 규제 공백 해소와 규제적정성에 기반한 금융안정 확보 방안을 모색함

### Ⅲ. 기대효과

- 시대적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기능하는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발전과 금융안정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규제·감독 체계의 타당성 부여를 위한 법제도적 기초 자료를 제공함
- 금융안정 관련 감독당국의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 위험 요소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함
- 주요 선진국들이 주력하고 있는 금융안정 기능과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발전 방향을 참조하여 금융안정과 금융업 발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주제어 : 금융안정, 금융규제, 금융시장의 신뢰도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적정성,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규제환류체계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establish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financial authoriti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bodies to develop and promote effective financial policy, regulation and supervision, was established on June 27, 2017. The report on the impact of financial technology development on financial stability has been released by FSB.
- In FSB's report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with Merit Authorities' Attention”, FSB analyzed the impact of Fintechs for potential financial stability, and identify present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have attracted the attention.
- In the above report, ten key areas of discussion and the essential elements to support the financial authorities' efforts to protect financial stability are presented. There are three Service provider's operational risk management, cyber risk mitigation, macro financial risk monitoring), and provides seven areas of legal and regulatory compliance together with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financial development.
-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domestic financial authorities to analyze the impact of technology-based financial service innovation, to develop the formulation of financial policies for financial stability as a rapid pace and to establ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 However, in Korea, there is still no evaluation or discussion based on the impact of financial stability on the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services and regulatory appropriateness such as FSB's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report.
- ▶ In addition,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of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through its report on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in February 2018, suggests to the bank's future may have different scenarios as different consequence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
- Fintech is lowering the barriers to entry into the financial services market, enabling a new business model centered on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hanging the risk and scope of the bank. And that regulatory schemes should evolve at a rapid pace.
-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uses the definitions used by the FSB for the concept of financial stability as it's development, while systematically classifying the categories of innovation as market support services for sector-specific innovation areas.
-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 its report, will continue to assess the potential risks and identify the impacts on financial stability, with a view to future changes in traditional supervisory and regulatory systems. But it also points out the side effects of regulation, which hinder innovation (obstructing fair competition, exposing financial consumers to unreasonable risks, etc.).

- ▶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financial stability in terms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new financial services are emerged from the viewpoint of regulatory suitability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erms of semantic extensibility, will be proposed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hat aims for harmonization and balance between financial stability and related regulatory systems through innovation.

## II. Major Content

- ▶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aise the necessity of monitoring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n the areas that can affect financial stability by Fintech type, they are presented importance measures about regulation reform for the harmonization of financial stability and FinTech innovation.
  - The FSB and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 presented the effects of the industry on financial stability and the need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countries and the matter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of each country.
  - In Korea,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Fintech development, but it is necessary to take a balanced approach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related legal system considering the impact on financial stability and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 by types of Fintech.

- In order to balance the market penetration policy of companie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or securing the reliability of related markets, it should be ensured by consumer participation through regulatory reflux system institutionally guaranteed.
  
- ▶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supervision by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improved and a new approach to the regulatory principle of financial sector is tried.
  - Review the possibility of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and suggest possible changes in the regulatory principles of the financial sector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 Review the scope of the appropriate negative regulation in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of the financial sector and how to change the regulatory system.
  
- Since the market trust of financial consumers can be an important variable for evaluating financi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nsure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make a certain contribution to the policy making of financial authorities through establishment of regulatory reflux system, it will be possible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so that legislative opinions that can be presented.
  - It will be considered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services on financial stability, and be establish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financial regulatory principles.



-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that can appear in each type according to the emergence of new financial services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financial stability when monitoring is need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 Seeking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based and to do regulatory reform on on the elimination of financial regulation gaps due to the emergence of new financial services and products with regulations.

### **III. Expected Effects**

- By emphasizing the role of finance functioning as the driving force of continuous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period, it provides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the validation of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by confirming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financial stability.
- It will provide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policy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concerned with financial stability, and contribute to long-term risk management and enhancemen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y providing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realistic policy development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services.
- By referring to the financial stability function that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focusing on and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financial development that is being discussed globally, it will be possible to plan harmonized system improvement that can secure both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business development.

# KLRI

- ▶ **Key Words** :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Market Reliabilit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system, Reflux System of Regulatory

요약문 .....	5
Abstract .....	11

##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제2장 기술혁신에 따른 제도적 영향과 규제방식 변화의 필요성 / 35

제1절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 산업의 영향과 국제적 논의 .....	37
1. 서설 .....	37
2. FSB의 보고서 .....	39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 .....	50
제2절 국내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 .....	56
1. 서설 .....	56
2. 클라우드펀딩 .....	61
3. 지급결제 .....	68
4. 자산관리 .....	75
5. 가상통화 .....	79
6. 인 증 .....	80
7. Reg-Tech .....	81
제3절 금융안정 관련 제도적 기반의 변화 필요성 .....	83
1. 금융혁신 기술보유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 .....	83

2. 금융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과 규제환류체계의 도입 가능성 .....	87
--	----

## 제3장 금융안정 관련 현행 법제 분석 / 93

제1절 서 설 .....	95
제2절 클라우드펀딩 .....	96
1.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	96
2. P2P 대출 .....	98
제3절 지급결제 .....	111
1. 간편결제 .....	111
2. 간편송금 .....	112
제4절 자산관리 .....	118
1. 로보어드바이저 .....	118
2. 상품추천서비스 .....	122
제5절 가상통화 .....	123
제6절 인 증 .....	126
제7절 Reg-Tech .....	130

## 제4장 규제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133

제1절 서 설 .....	135
제2절 금융안정 관련 금융규제 체계의 재설계 가능성 .....	137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규제철학의 변화 .....	137

2. 규제환류체계 : 민관학 전문가 및 금융소비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함께 규제 설계	145
제3절 유형별 핀테크 관련 금융법제 개선 방안	150
1. 클라우드펀딩	150
2. 지급결제	167
3. 자산관리	168
4. 가상통화	170
5. 인 증	172
6. Reg-Tech	173

## 제5장 결론 / 175

참고문헌	179
------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7년 6월,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는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즉, FSB는 Fintech로 일컬어지고 있는 금융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서비스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Fintech의 잠재적 금융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각 금융당국의 관심을 끌만한 감독 및 규제 문제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sup>1)</sup>

FSB의 보고서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에서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육성과 함께 금융안정성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 지원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하여 우선적 국제협력 3개 분야와 법제 및 규제 정합성 확보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7개 분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sup>

FSB는 효과적인 금융 정책과 규제, 감독의 이행을 발전·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별 금융당국과 국제기준 선정주체 간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2009년부터 설립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FSB가 2017년 6월, Fintech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제시하면서 국제 협력이 필요한 10개 분야를

---

1)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 6. 27., pp.1~59.(www.fsb.org)

2) *ibid.*, pp.2~3.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국제적 움직임이라고 할 것이다. FSB가 제시한 주요 논의 분야 중에서 국제적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은 i)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 (Managing operational risks from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ii) 사이버 리스크 감소 (Mitigation cyber risks), iii) 거시금융 위험 모니터링(Monitoring macrofinancial risks) 의 3개 분야이며, 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나머지 7개 분야의 쟁점과 10개 분야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을 바꾸어 소개하기로 한다.<sup>3)</sup>

FSB가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선 국제협력 사항은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위험 관리 및 위험 모니터링 분야로서, Fintech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3자 서비스제공 업체의 운영리스크 관리, 사이버 위험 완화, 거시금융 위험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또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항들 중 국경간 법적 이슈와 규제 정합성, 적시성 원칙에 따른 규제 범위와 새로운 규제에 대한 공개 등 규제적적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향후 금융규제나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 등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국내 금융당국의 경우에도 금융정책 수립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소위 Fintech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내 금융안정 법제 개선 방향에 적극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서는 2018년 2월,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보고서를 통하여, 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하여, 은행의 미래는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는 금융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정보의 역할이 중심을 이루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여, 은행의 리스크와 영업범위에 대한 변화를

3)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p2~3.(www.fsb.org)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능과 규제방식도 빠른 속도로 진화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그 주요 맥락이다.<sup>4)</sup>

더욱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전통적인 감독이나 규제체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부작용(공정경쟁 방해, 금융소비자를 부당한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 등)에 대하여서도 지적<sup>5)</sup>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장을 바꾸어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세계적 논의의 추세는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는 바, 2017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한다는 취지로 금융시장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였으나,<sup>6)</sup>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4대전략에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을 15개 핵심과제로 구성하면서 금융안정 유지에 관한 사항은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은 추진기반으로서 3개과제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7)</sup> 즉,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이 “금융혁신 추진 방향”에 추진기반으로서 작용하지만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나 활성화와 같은 핵심과제가 “생산적 금융”과 “금융산업 경쟁촉진”에 대한 주도적인 방향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FSB가 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논의의 방향과 유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FSB의 해당 보고서와 같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7년 12월까지의

4)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4.(<http://www.bis.org>)

5)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4.(<http://www.bis.org>)

6)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홈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개 - 주요업무계획 - 2017 주요업무계획 ] ([http://www.fsc.go.kr/about/fsc\\_plan.jsp?menu=7130200#TabNotice1](http://www.fsc.go.kr/about/fsc_plan.jsp?menu=7130200#TabNotice1) 2018.10. 22. 최종검색)

7)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홈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개 - 주요업무계획 - 2018 주요업무계획 ] ([http://www.fsc.go.kr/about/fsc\\_plan.jsp?menu=7130200#TabNotice0](http://www.fsc.go.kr/about/fsc_plan.jsp?menu=7130200#TabNotice0) 2018.10. 22. 최종검색)

우리나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가 2018년 6월에 공개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Fintech 발전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이나 이에 대한 관리·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한 당국이 2017년까지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금융안정 잠재 위험 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등과 같은 비은행금융기관까지의 건전성만을 다루었으나,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금융안정 현안 분석’의 한 부분으로 “국내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여 발표한 것이다.

「금융안정보고서」는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2회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동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금융안정”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증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를 통하여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상태로 이해된다.<sup>8)</sup>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금융안정이나 거시건전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Pay”와 같은 국경간 모바일 제3자 지급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에 대한 규제 적정성과 규제 적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금융감독체계에 더해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Fintech 분야 이슈들이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6월의 「금융안정보고서」에 국내 현황과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가 포함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P2P 금융이나 로보어드바이저 등 유형별 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다른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잠재리스크 증가 가능성이나 사이버 리스크 내지 제3기관 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8) 한국은행 [ 홈 - 금융안정 -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 ], 「금융안정보고서」, 2018. 6., 서문 일부 내용 인용 및 문구 수정(<http://www.bok.or.kr/portal/bbs/P0000593/view.do?nttId=10045275&menuNo=200769> 2018.10.22. 최종 검색)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우기, Reg-Tech 도입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부분이 될 것임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입법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존에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SB가 국제협력 필요성과 각 당국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관련 법제 적용 여부 및 규제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유형별 금융안정 관련성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고민함으로써 금융안정과 관련 법제 개선 방안 간의 조화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FSB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금융정책이나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국제적 협력이나 당국의 관심이 필요함을 인지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Fintech의 발전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여 금융안정 법제 개선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규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특성상 금융안정성은 서비스·상품 제공자로서의 업체와 이용자(금융소비자) 간 편리성·접근성·보안성·혁신성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법제 각론 규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총체적·종합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다.

즉, 이번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안정 법제 개선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에 따른 Fintech의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과 장기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기초로 한다. 또한,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종합적·총체적 차원의 Fintech 관련 금융규제 체계를 검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환류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다. 나아가,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형별 관련 입법안을 연혁적·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금융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범위는 이와 관련된 대상 법규 및 입법안으로 한정하되, Fintech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금융소비자로서의 보호에 필요한 원론적 규제 체계의 변경 가능성에 필요한 논의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기초로 하여,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는 i) 금융규제 체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검토, ii) 금융감독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규명과 Fintech시장의 장기적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방안 제시, iii) 시장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서의 규제환류 체계 확립과 Fintech 관련 규제 설계 과정에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iv)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 관련 법제 개선안 도출으로 한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과 연구자의 연구역량 부족에 따라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향후 주제별 심층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와 연구를 이어나가기로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융안정 법제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즉, 정책 분석과 금융법제 개선방안 검토에 필요한 문헌 연구 및 현행 정책과 법령의 분석 외에도, 해외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및 각국 금융당국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검색하도록 한다.

또한, 법령과 정책에 대한 문리적 연구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각 분야 유관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아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민관학 협력방식의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즉, 금융분야 민간연구원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통적인 금융 관련 연구원과 Fintech 및 과학기술분야의 규제혁신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과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렴함으로써 정확한 과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 민간기구 내지 협회 등의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과도 긴밀하게 연구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추세와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 및 실무자·연구자들을 포함하여, 금융실무·금융법제·규제혁신·소비자보호·FinTech 분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를 통하여 수시로 간담회의 및 전문가회의 방식의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방향성 확정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전문가회의 추진상황은 각 회의 진행 회차별로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

각 회차별 회의 내용은 다음 [ 표 1 ], [ 표 2 ], [ 표 3 ], [ 표 4 ]와 같다.

[ 표 1 ] 제1차 전문가 회의 (2018년 2월 9일)<sup>9)</sup>

연구 소개 및 금융안정 개념 정의와 연구대상 법제 범위 검토

- ‘금융안정 법제 개선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향, 민관학 협력방식 관련 개괄적 설명
- FSB의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보고서 주요 내용 및 ‘금융안정 법제 개선 연구’의 연구 방향성 소개
  - 연구방향성의 정확한 설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방식의 연구 추진 방법에 대한 소개와 의견 수렴
  - 금융안정 관련 개념 정의 및 적용범위 대상 확정 등을 위한 검토 의견 요청

9) 제1차 전문가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 검토 내용

### 연구방향성 검토

- 보고서 작성은 혁신 관련 이슈 도출을 통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흐름에 맞을 것임
- FSB의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보고서 내용 전문을 번역하고, 이에 대한 핵심사항과 국내 관련 쟁점들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하여 다시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확한 방향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민관학 협력방식의 연구 진행에 대한 의견 수렴

- 민관학 협력 방식의 연구 진행은 민간 금융연구기관과 학계, 법제연구원과의 다양한 협업방식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자문단 활용을 통한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개최 방식 외에도 보고서 공동집필,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각 대학의 전문가들 외에도 국제금융학회나 KIEP와의 협업도 필요할 것으로 고려됨

### 금융안정 관련 개념 정의와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과의 관계 검토

- 기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협의의 '금융안정' 개념은 IMF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안정' 개념에 가까우며, 은행의 시스템위험과 금융정보 안정성을 바탕으로 거시적 안정성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안정'의 개념을 전통적 금융안정에 관한 거시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나 금융정보 공유문제 등과 같이 새로운 금융안정 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도록 하여, 광의의 '금융안정'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FSB의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보고서 수준의 논의방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최근 논의되는 '시장신뢰성'을 금융시장과 관련된 거시안정성과의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등의 정보안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금융안정의 기준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법제 개선 필요 대상 법제의 범위 확정과 개선방향 검토

- FinTech 유형별로 안정성 침해 요소를 분석하여 리스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행 법제의 보완 및 유지 필요성과 그 수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금융안정보고서] 외에도 각국의 [금융안정보고서]를 검토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면 더욱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표 2 ] 제2차 전문가 회의 (2018년 2월 23일)<sup>10)</sup>

## FSB의 관련 보고서 내용 세부 검토를 통한 연구방향 검토

## FSB의 관련 보고서 내용 세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연구방향 설정

- FSB 보고서에서는 FinTech의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 영향 사항과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FinTech의 빠른 발전이 금융안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음
- 다만, 국내에서는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FinTech 유형이 한정적이어서 금융안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아직은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금융안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몇가지 분야에 대하여서는 검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P2P대출에 대한 개별입법 작업이 추진 중이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통과되는 경우 해당 P2P대출이 일정한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금융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국내에서 활성화가 부진하여 아직은 그 비중이 적지만 온라인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임
- 현재 국내에서 Open-API 나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가 미진한 상태에서 거시건전성 등의 금융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나 입법방향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나 소비자보호의 문제 관점에서 금융안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검토 내용

## 금융안정 개념 정의에 따른 연구방향의 설정

- '금융안정'의 기존 정의와 본 연구에서 다룰 '금융안정'의 범위에 대한 이해의 폭 조정
- 한국은행에서 매년 2회 발행하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의 거시건전성 관련 내용 외에도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 영향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함
- 금융안정 개념을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거시건전성을 위주로 하여 본다면, 현재시점에서 국내에서 FinTech의 전체 금융업에 대한 비중이나 활성화 정도가 낮아 직접적으로 금융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수치적인 판단은 어려울 것임
- 그러나, 금융업 주체별로 본다면 FinTech의 발전에 따라 각 주체별 금융안정성에 일정한 변화와 영향이 있을 것이며,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금융소비자, 이용자 보호에 관한

10) 제2차 전문가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문제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실익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nTech의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에 대한 논의는 규제적정성을 전제로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금융사와 관련 플랫폼에 대한 미시적 안정과 신뢰도 확보/금융소비자 보호/업체 등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규제 환류체계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표 3 ] 제3차 전문가 회의 (2018년 3월 16일)<sup>11)</sup>

#### 착수심의회 결과 보고 및 과제명 변경에 따른 연구범위 설정 검토

##### 착수심의회 결과 보고 및 연구과제명 변경 등에 대한 소개

- 2차례의 전문가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과제명에 “기술혁신에 따른”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함으로써 최종 연구과제명을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 개선 연구]로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연구조정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변경된 과제명으로 연구수행하게 되었음을 설명
- 2차례의 전문가회의와 착수심의회 의견에 따라 과제명과 과제범위를 조정하였음과 함께 이에 따른 목차안을 제시하여 소개함
- 기존에 논의해오던 '금융안정'의 틀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과 관련 법제의 개선이라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충실하도록 연구의 내용을 확정할 필요성 검토 및 확인

#### 검토 내용

##### 연구 내용 및 목차 구성안 논의

- 연구의 범위를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개념의 확장과 통시적 시각에서의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정해야 할 것임을 확인
- 특히, 금융안정 개념에는 금융안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으로 확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합의된 결론에 이룸
- 또한, 금융주체별 금융안정 관련 법제 분석의 전제로서, 기술혁신에 따라 기존 금융안정 개념의 논의 틀에서 머물지 않고, 금융에 대한 '기술혁신의 적극적 수용' 개념을 더하여 통시적 시각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규제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시도할 것에 대하여 합의된 결론에 이룸
-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규제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 제시의 필요성에 동의함

11) 제3차 전문가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적정성과 원칙허용 방식 규제 체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산업의 발전이 금융안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적정성과 규제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와 관련 법제의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성에 동의함
- 금융인프라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시장 신뢰도 확보에 대한 제도적 접근 차원에서 금융법제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제에 관하여서도 개정 필요 규정이 있는 경우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신뢰 확보와 소비자의 금융환경 안정을 위한 피해구제 관할 명확화 등 소비자금융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합의된 결론에 이름
- 규제의 설계/집행에 대한 감독방식의 전환 필요성에 따른 당사자 참가 방식의 규제환류체계(예: 규제샌드박스 참가업체, 참가소비자, 감독당국, 전문가의 법제 제/개정 의견 적극개진을 통한 입법절차 참가 법제화) 설계를 통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방식의 변화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에 도달함
- 목차(안)에 대하여 제2장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제도적 영향과 규제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국제적 논의와 국내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 위주로 소개하고, 금융안정 관련 제도적 기반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이슈화함으로써, 제3장에서 관련 입법동향과 각 입법안 검토를 시작으로 각 금융주체별 금융안정 관련 현행 법제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문제점을 제기하여 논의의 방향을 확정하고, 제4장에서 금융안정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금융안정 관련 규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소비자 신뢰성 편입방안, 유형별/주체별 금융안정 관련 규제적정성 확보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제5장 결론에서 마무리를 하는 구성으로 논의를 진행함
- 원칙중심규제와 포괄적네거티브 규제, 규제환류체계의 법제화 등 다양한 규제방식 전환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함

#### [ 표 4 ] 제4차 전문가 회의 (2018년 9월 19일)<sup>12)</sup>

##### 과제추진 현황 소개와 유형별 금융안정 규제적정성 확보 방안 및 법리적 쟁점 검토

##### 과제추진 현황 소개

- 3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존에 논의하여 오던 건전성 위주의 금융안정 관련 법제 이슈에서 나아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발달이 금융안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12) 제4차 전문가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하여 관련 금융안정 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실무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본 과제의 방향성을 수립하였음을 소개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의 ‘금융안정’ 개념에 따른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FinTech 유형별 특정 시장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 형성 문제나,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한편, 이에 따른 규제적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도록 함

### 검토 내용

#### 유형별 금융안정 관련 규제적정성 확보 방안 검토

- FSB 내지 바젤위원회의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의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들의 내용을 토대로, 각국의 FinTech 산업 유형별 발전 현황에 따라 금융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안정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이 달라질 것임
-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금융안정 확보라는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지고 금융안정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하므로 규제적정성이라는 틀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FinTech 유형별 서비스 및 상품이 시장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규제공백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새로 채택하도록 하되, 금융안정에 큰 영향이 없는 업태나 서비스/상품 등에 대하여서는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 유형별 법리적 쟁점 검토 및 법제 개선방안 논의

-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FinTech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이견이 많으므로, 이 보고서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미리 잘 설명하여,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구범위로 하는 목적을 밝힘으로써 그 방향성에 맞게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P2P금융의 경우에 최근 수 개월동안 대출형·지분형·보험형 등 이슈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좁혀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Reg-Tech의 경우에는 Compliance 업무의 기술적인 방식이 논의의 주가 되는데, FinTech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임. 따라서, 가상화폐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범위에 포함시킨 목적과 필요성을 잘 설명하여야 함
- 그 밖에도 본 연구가 개시된 이후 다양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 대한 논의의 방향도 계속해서 바뀌는 추세를 보이기도 함. 다만, 현 시점에서 연구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논의 위주로 연구범위를 확정하여 시장신뢰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기초로 금융안정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임

## 제2장 기술혁신에 따른 제도적 영향과 규제방식 변화의 필요성

제1절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 산업의 영향과 국제적 논의

제2절 국내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

제3절 금융안정 관련 제도적 기반의 변화 필요성



## 제2장

# 기술혁신에 따른 제도적 영향과 규제방식 변화의 필요성

## 제1절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 산업의 영향과 국제적 논의

### 1. 서설

기존에 안정성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던 금융업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그 예로 고객이나 소비자의 보호만을 위주로 생각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편리성과 혁신성 등 소비자의 편익을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최근에는 입법과정에서의 민간참여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규제샌드박스 참가기업이나 참가소비자와 같은 다양한 민간분야의 참여자가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규제의 적정성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환류체계 등의 입법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sup>13)</sup>

한편,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규제적정성 문제에 관한 문제도 생겨나고 있는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과 같이 빅테크(ICT+빅데이터+물류 등의 융복합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수많은 은행과 금융기관, 회사가 이들 기업과 제휴하고 있어서 빅테크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규제 적정

13) 구자현 외,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KDI, 2016.9., 204면; 김명아,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10., 256~257면

성을 고려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움직임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18년 2월 공개한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밖에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 수행은 영국과 중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노베이션허브를 구축하여 지원하고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의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상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당 서비스나 상품을 사업성과 위험성을 시범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입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입법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권입법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에 일정한 입법권을 수여하고, 국무원은 해당 부처나 지자체에 일정한 입법권 및 행정권한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의 출현에 따른 신산업 육성에 맞춤형 규제를 하고 있다.<sup>14)</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2018년 10월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서 김용범부위원장은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를 가속화한다.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규제를 미세조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5)</sup>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경우에도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관련하여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방식의 종합적 변화 가능성 검토와 전반적인

14) 영국의 원칙중심의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의 출현에 따른 규제공백의 문제나 과도한 규제 적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따라서 기술과 금융이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법치주의가 적용되어 국회의 입법권이 강하게 작용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등을 포함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규제환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발전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15) Newsis, “김용범 “비은행권 건전성강화 마련”...가상통화 규제 '국제공조'”, 2018년 10월 23일자 기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23\\_0000450646&cID=10401&pID=104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23_0000450646&cID=10401&pID=10400) 2018.10.23. 최종검색)



규제체계 재설계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금융안정에 대한 산업의 영향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는 2017년 6월 공개된 FSB의 보고서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와 2018년 2월 공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 분야 관리감독당국 간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협력분야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개선 방안 마련에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2. FSB의 보고서

FSB가 2017년 6월 27일 공개한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에서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육성과 함께 금융안정성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 지원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하여 우선적 국제협력 3개 분야와 법제 및 규제 정합성 확보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7개 분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6)</sup>

FSB는 효과적인 금융 정책과 규제, 감독의 이행을 발전·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별 금융당국과 국제기준 선정주체 간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2009년부터 설립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FSB가 2017년 6월, Fintech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제시하면서 국제 협력이 필요한 10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국제적 움직임이라고 할 것이다.

FSB가 제시한 주요 논의 분야 중에서 국제적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은  
i)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Managing operational risks from third-party

16)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p.2~3.

service providers), ii) 사이버 위험 감소(Mitigation cyber risks), iii)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Monitoring macrofinancial risks) 의 3개 분야이며, 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나머지 7개 분야의 쟁점은 iv) 국경 간 법적 이슈 및 규제 협의(Cross-border legal issues and regulatory arrangements), v)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거버넌스와 공시 체계(Governance and disclosure frameworks for big data analytics), vi) 규제의 한계 평가 및 시의 적절한 업데이트(Assessing the regulatory perimeter and updating it on a timely basis), vii) 민간 분야와의 경험 공유(Shared learning with a diverse set of private sector parties), viii) 유관 당국들과의 대화 창구 개방 추진(Further developing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cross relevant authorities), ix) 새로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감독담당자 역량 확보(Building staff capacity in new areas of required expertise), x) 디지털 통화의 대안적 구성에 대한 연구(Studying alternative configurations of digital currencies) 등 이다.<sup>17)</sup>

동 보고서에서는 보고서의 기본적인 기준(Frame Work)을 소개하고 있는데, 혁신을 기반 기술과 규제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주요 경제 기능과 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잠재적인 이점과 함께 및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형별로 FinTech 활동을 제시하고, FinTech 신용, 로보 어드바이저, 도매 결제 혁신, 디지털 통화,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sup>18)</sup>

한편, 잠재적 편익으로는 비금융기관에 의한 분권화와 상호 통합 증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투명성·경쟁력·탄력성 확대, 특히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금융 수용성 및 경제성장을 들고 있다. 잠재적 위험으로는 미시적 금융(예: 신용 리스크, 레버리지, 유동성 리스크, 만기 불일치 및 운영 리스크, 특히 사이버 및 법적)과 거시적 금융(예: 지속 불가능한 신용 성장, 상호연계 및 상관관계 증가, 기존 기관들의 위험부담을 위한 인센티브, 경기순응성, 전염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에서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19)</sup>

17)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p2~3.(www.fsb.org)

18) ibid, p.3.

19)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p2~3.(www.fsb.org)

데이터와 정보의 부족은 FinTech의 금융안정 영향의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제약이 된다. 산업계와 학계가 자발적으로 특정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규제 기관과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성격이 이와 다를 수 있다고 평가하나,<sup>20)</sup>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의 측면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며, 금융안정, 경쟁성, 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금융간의 상호 보완성과 균형 유지를 들고 있다.<sup>21)</sup>

FSB가 밝히고 있는 이러한 FinTech의 긍정적 영향들은 유형별 리스크가 아직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동 보고서의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판단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금융안정을 위한 규제 차원의 접근 보다는 기술혁신과 이용자편익에 중점을 두고 효용성과 접근성을 기초로 한 혁신성 증대를 위한 산업 활성화 방안과 장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관련 법제의 공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아래의 내용은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이주로 정리한 내용이다.

### (1) 당국에서 주목해야 할 FinTech로 인한 감독 및 규제 쟁점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혁신(FinTech)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의 결정과 관리·감독의 범위와 수준에 대하여서 정책결정자 및 규제 담당자, 관리자, 감독관들은 발전적 기회와 금융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많은 혁신들이 아직 충분한 금융 사이클 주기를 거쳐 입증되지 못한 상태인 현재의 초기 단계에서 내리는 각 정책적 결정들은 이후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례로 남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정책결정자들이

Attention』, 2017.6.27., pp.7~15.

20) ibid. p.3.

21) ibid. pp3~4.

정책결정에 있어서 금융안정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이익이나 기회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적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 G20 의장국은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당국들이 주목해야 할 FinTech의 감독 및 규제 쟁점을 파악하고 분석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sup>22)</sup>

현재 시점에서 의 금융안정 영향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은 것은 공식 데이터 및 유출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를 평가할 때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생 기업과 기존 기업의 사업 모델 및 시장 구조가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sup>23)</sup>

여러 유형의 가 가지는 공통점과 국제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국제 협력이 커질수록 위험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금융서비스의 혁신 발전 및 확산을 저해하고 금융 안정성 촉진을 위해 효과성을 제한하는 규제 체제의 본질성과 차별화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24)</sup>

문헌조사, 학자 및 산업 참여자들의 논의 그리고 에 대한 규제적 접근방식 현황파악의 결과, FSB는 현재 혁신 발생으로 인한 중대한 금융 안정 위험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sup>25)</sup>

다만, 분석의 결과 당국이 주목해야 할 10개의 쟁점이 존재하며, 그 중 3개는 국제협력을 위한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 영역을 다루는 것은 금융 안정 및 책임감 있는 혁신 촉진 그리고 당국들의 혼선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다.<sup>26)</sup>

22)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1.

23) *ibid*, p.1.

24) *ibid*, p.1.

25) *ibid*, p.1.

26)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2.

**(2) 국제협력을 위한 우선 분야**

FSB는 국제기구와 국가 당국들이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미시·거시 차원의 안정적인 규제체제를 발전시킬 때, FinTech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구해야할 영역은 다음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7)</sup> 다음의 [ 표 5 ]는 FSB가 밝히고 있는 우선 국제협력 분야 3개와 금융안정 관련 당국들이 주목해야 할 7가지 이슈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 표 5 ] FSB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국제협력 분야

우선 협력 분야	A.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리스크 관리	당국은 금융 기관에 대한 주요 제3자 서비스공급자의 현재 감독 체계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서비스에서 금융기관이 동일한 제3자 서비스공급업체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금융 당국 간 그리고 IT 안전 및 보안을 담당하는 비전통적 파트너들과의 국제적인 협력 필요성이 있다. <sup>28)</sup>
	B. 사이버 위험 감소	중대하고 성공적이었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들은 사이버 리스크 완화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비상대응체계 구축, 정보공유, 모니터링, 초기 시스템 설계 시 사이버 보안 반영 그리고 금융 및 기술 활용 능력은 금융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이버 사건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sup>29)</sup>
	C.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현재 이러한 위험이 실현되고 있다는 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위험이 빠르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스템 불안과 경기 순응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특정 시장으로의 집중화, 대출 플랫폼의 자금흐름 확대와 불안정 등이 있다. FinTech 분야의 공식 데이터 및 비공개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FinTech의 금융안정 영향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당국은 기존 정보 및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고려해야만 한다. <sup>30)</sup>

27) *ibid*, p.2.

28)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2.

29) *ibid*, p.2.

30) *ibid*, p.2.

그 외 금융안정 관련 당국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	<b>D. 국경 간 법적 이슈 및 규제 협약</b>	해외대출, 스마트 계약을 포함하여 무역 및 지불 거래의 혁신은 국가적 법적체계의 상호 관할적 호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스마트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강제력 그리고 분산원장기술(DLT)의 다른 응용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향후 더욱 상세한 내용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sup>31)</sup>
	<b>E.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거버넌스와 공시체계</b>	빅데이터 분석은 광범위한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위험 식별 및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증권 거래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빅데이터 분석 모델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은 정부 당국들이 모델의 견고성을 평가하거나 시장 활동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성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sup>32)</sup>
	<b>F. 규제의 한계 평가 및 시의적절한 업데이트</b>	FinTech 규제 기관들은 FinTech 분야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며 규제의 한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거나 이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기술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접근법이며, 금융 서비스 활동에 기초한 접근법으로써 더 쉽고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sup>33)</sup>
	<b>G. 민간분야와의 경험 공유</b>	경험의 공유와 FinTech 개발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혁신에 따른 이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지속적으로 민간분야와의 통신 채널을 향상시키고,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 등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도출된 성공적 결과와 도전 과제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규제 적용 모델에 대한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up>34)</sup>
	<b>H. 유관 금융안정당국과 대화창구 개방 추진</b>	잠재적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져가는 FinTech 활동과,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상호 연계성으로 인해 당국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대화 창구를 발전시키길 바랄 것이다. <sup>35)</sup>

31) *ibid*, p.2.32) *ibid*, p.2.33) *ibid*, pp.2~3.34) *ibid*, p.3.35) *ibid*, p.3.

그 외 금융안정 관련 당국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	<b>I. 새로운 FinTech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감독담당자 역량 확보</b>	감독관과 규제 기관들은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sup>36)</sup>
	<b>J. 디지털 통화의 대안적 구성에 대한 연구</b>	국가 금융시스템과 세계 통화체제를 위한 디지털 통화의 대안적 구성에 대한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 관련 당국은 개발 모니터링 이외에도 통화정책, 금융안정, 세계 통화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통화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관련 이슈 중에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 행위(사이버 공격 포함)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sup>37)</sup>

#### (4) FinTech에 대한 규제적 접근

규제 기관이 FinTech 활동에 대응하는 정도는 현재 규제 체제가 새로 부상하는 위험성에 대응 가능한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적 중요성과 관련된 거시 금융 현안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SIFIs)을 처리하기 위한 FSB정책 프레임워크에 포함된다. 신용, 레버리지, 유동성 및 만기 불일치와 같은 특정 활동의 일부 미시적 금융 위험은 그림자 금융 실체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FSB정책 방향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Fintech 활동 중 다수는 기존의 규제 체제 내에서 다뤄지지만, FSB는 조사 대상 관할 당국의 대다수가 이미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Fintech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관련 규제의 변경 범위와 규모 또는 변경 계획은 무엇보다도 각국 국내의 금융 및 Fintech 분야의 규모 및 구조에 따라, 그리고 기존의 규제 체제를 통해 제공된 탄력성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일부 규제 기관은 최근 Fintech 영역에 관한 출판물이나 제안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다수의 당국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고

36) *ibid*, p.3.

37) *ibid*, p.3.

38)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4.

새로운 기업과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나 이노베이션 허브 또는 액셀러레이터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주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시장 완전성, 금융 수용성 및 혁신과 경쟁 촉진이다. 금융 안정성에 관하여서는 Fintech에 관한 최근의 규제 혁신 또는 규제 개혁에 관한 계획에서 그 정책적 목표로는 언급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sup>39)</sup>

Fintech에 대한 규제적 접근과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는 것은 금융안정에 미치는 일정한 영향과 효과가 될 것이다. 각 금융법 체계 내에서 Fintech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효익 내지 문제점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이 취해야 할 규제 체계와 수준, 범위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FSB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Fintech의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설정에 일정한 의미를 주게 된다. 다음의 [ 표 6 ]에 정리된 긍정적 영향으로서의 효익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일정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 표 7 ]과 [ 표 8 ], [ 표 9 ]에 정리된 부정적 영향으로서의 위험성은 규제공백이 있거나 회색지대가 있는 분야에 대한 금융안정 관련 규제 수준과 입법안 마련시 고려해야 할 규정들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 표 6 ] 금융안정성에 적용되는 주요 이점<sup>40)</sup>

잠재적 이익	금융 안정성과의 연관
분권화 및 다각화	금융 시스템의 분산화 및 다각화는 일부 상황에서 금융 충격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소수의 (혹은 다수의) 공급 주체의 실패가 있어도 다른 종류의 금융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적다.

39) *ibid*, pp.4-5.

40)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13.



잠재적 이익	금융 안정성과의 연관
효율성	경합으로 이루어진 인센티브를 포함한 운영 효율성은 금융 기관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고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투명성	투명성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며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다 나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한다. 특정 위험에 노출된 금융 상품을 파악하고, 시장을 보완하며 시장 참여자의 위험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금융 상품 창출을 촉진한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가계와 기업의 금융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위험에 노출을 분산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한편, 미시적 위험성은 개별 기업, 금융 시장 인프라(FMI) 또는 섹터를 충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결정화는 중요한 기능이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연쇄반응의 영향과 함께 회사 또는 부문 전반의 어려움을 유발할 경우 [ 표 9 ]와 같이 금융 시스템에 시스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41)</sup>

[ 표 7 ] Fintech가 촉발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의 유형<sup>42)</sup>

잠재적 위험성	
미시적 금융리스크	거시적 금융리스크
재원	파급 효과
만기 불일치	
유동성 불일치	경기순응성
레버리지	

41) *ibid*, p.14.

42)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p.13~14.

잠재적 위험성	
미시적 금융리스크	거시적 금융리스크
운용 자원	과민변동성
국가 통치 / 프로세스 제어	
사이버 위험	
제 3자 서비스 공급자 의존성	시스템적 중요성
법/규제 위험	
FMI으로부터의 비즈니스 리스크	

[ 표 8 ] 미시 금융 리스크<sup>43)</sup>

잠재적 위험성	금융 안전성과의 연관
재 원	
만기 불일치	만기시 대출을 연장하면 롤오버 위험이 발생한다. 해당 유형이 중요한 금융시장에서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금융안정에 대한 시스템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유동성 불일치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특성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행 위험”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파이어 세일)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시장, 신용 또는 기타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래 상대방을 잠재적으로 손실에 노출시킨다.
운용 자원	
국가 통치/ 프로세스 제어	국가 통제나 프로세스 제어가 미흡할 경우 금융서비스 또는 핵심 인프라 제공에 직접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

43)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13.

잠재적 위험성	금융 안전성과의 연관
사이버 위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금융의 취약성은 서로 다른 기관의 시스템이 연결될 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
제3자 서비스 공급자 의존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나 시장이 동일한 제3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법/규제 위험	법/규제 위험은 Fintech 활동이 진화하거나 규제차익이 발생할 경우 더 커질 수 있다. 손실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규의 불확실성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금융시장인프라(FMI)로부터의 비즈니스 리스크	금융시장인프라(FMI)는 그들의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서비스 철회로 이어진다면 이로 인한 핵심적인 인프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거시 금융 리스크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증폭시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차원의 취약점을 말하며, 중요한 파급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회사, 투자자 및 고객 간의 상호 작용과 크게 연관성이 있고, 파급 효과, 경기순응성, 과민변동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이 포함되어있다.<sup>44)</sup>

거시 금융 리스크 차원에서의 잠재적 위험이 금융안정성과 가지는 연관관계는 다음 [ 표 9 ]와 같다.

[ 표 9 ] 거시 금융 리스크<sup>45)</sup>

잠재적 위험	금융 안정성과의 연관
파급 효과	특정 금융사 또는 해당 분야의 금융주체가 겪는 곤경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업종 전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는 문제가 되는 기관이나 다른 기관과 해당

44)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6.27., p.14.

45) ibid, p.15.

잠재적 위험	금융 안정성과의 연관
	부문 간의 직접적인 노출(관계)을 가지고 있거나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전반적인 불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경기순응성	시장 참여자는 장단기 경제 성장과 시장가격 변동에 대한 영향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경제 상승기에 은행이 신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경우, 경제가 위축되어 자본이 위험을 받게 되면 극단적인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상승하던 시기 동안의 금융시장에서는 낮은 위험으로 가격 책정을 하지만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위험 부담이 생긴다.
과민변동성	금융 시스템은 뉴스보도에 따른 과민 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과민 반응은 지불 능력(담보 능력)이나 유동성 관련 문제를 일으켜 금융 시스템에 자산 및 신용 시장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사업 모델이 일정하게 유사하거나 공통의 리스크 관련 금액이 있을 때에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시스템적 중요성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혹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여겨지는 독립 주체 기업은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대중의 지지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서비스에 대한 약탈적 가격 책정은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승자가 모두 차지”하는 구조), 이러한 경쟁제한적 상황은 해당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도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게 된다.

###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에서는 Fintech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하여, 은행의 미래는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Fintech는 금융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정보의 역할이 중심을 이루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여, 은행의 리스크와 영업범위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능과 규제방식도 빠른 속도로 진화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sup>46)</sup>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Fintech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의 정의는 FSB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혁신서비스의 분야별 분류는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Fintech의 유형별 분류는 다음 [ 표 10 ]과 같다.

[ 표 10 ] 혁신서비스 분야<sup>47)</sup>

부문별 혁신			
신용.예금및 자본 조달 서비스	지불, 청산 및 결제 서비스		투자 관리 서비스
클라우드 펀딩	소매	도매	고빈도 트레이딩
대출 시장	전자 지급	전송 시스템	카피 트레이딩
모바일 뱅크	피어투피어 전송	FX 도매	전자 트레이딩
개인신용평가	디지털 화폐	디지털 교환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스
시장 지원 서비스	포털 그리고 데이터 수집기		
	환경(인프라, 오픈 소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데이터 응용프로그램(빅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 예측 가능 모델)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보안(고객 식별 및 인증)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 모바일 기술		
인공 지능 (보트, 금융 자동화, 알고리즘)			

46)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4([www.bis.org](http://www.bis.org) 2018.10.22. 최종검색)

47)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9.

더욱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Fintech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전통적인 감독이나 규제체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Fintech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부작용으로서 규제가 공정경쟁을 방해하거나, 금융소비자를 부당한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 대하여서도 지적<sup>48)</sup>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특히, 은행 감독기관과 규제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동 보고서 제4장(Part IV - Implications for bank supervisors and regulatory frameworks)에서는 해당분야 각 감독당국 간 협력과 감독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규제 체계 간 관련성의 강화 추세, 혁신 촉진의 기능 등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 1) 공공 위험 요소 관리

금융감독의 범위를 넘는 공공 정책 목표의 위험 요소 관리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발은 감독 범위를 넘어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경쟁 촉진 및 AML/CFT 준수와 같은 기타 공공 정책 목표의 위험 요소가 될 만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49)</sup>

적절한 경우, 은행 감독기관이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관련 규제 당국 및 공공 당국과의 의사소통 및 조정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은행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50)</sup>

48)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38.

49) ibid, p.33.

50) ibid, p.33.

여러 관할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및 AML/CFT 표준지침과 같은 Fintech의 출현과 관련된 위험 중 일부는 은행 감독기관과는 별도로 공공 당국의 책임 하에 있지만 은행의 Compliance 위험에는 여전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규제 당국 간 부문 간 협력은 건전한 감독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기 위해 특정 관할권 내에서 보장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의 권한과 중복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조정을 통하여 소비자 이해 증진 프로그램과 같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경쟁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와 관련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51)</sup>

한편, 대부분의 관할 기관에서는 유사한 활동에서 현행 은행 및 비은행 기관 모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Fintech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은행 조직은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 예치금을 보유하는 공공 신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비은행 경쟁 업체에 비해 직접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은행 감독기관과 비영어권 Fintech기업에 대해 직접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타 공공 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는, 현직 은행 및 비은행 기관 모두의 활동에 대한 규제 필요 분야 관련 정책적/제도적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52)</sup>

## 2) 혁신 촉진과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 가능성 제시

동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노베이션 허브와 액셀러레이터 및 규제 샌드박스과 같이 금융 서비스의 혁신적인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담당자와 참가자 간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sup>53)</sup>

51) *ibid*, p.33.

52)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p.33~34.

53) *ibid*, p.38; *ibid*, pp.40~41.

각국의 감독자는 서로의 접근 방식과 실행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비슷한 접근 방식이나 실행을 구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수 있게 되는 장점 때문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FSB는 특정 국가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간 이루어지는 후속 양자 회담에서 지원되는 감독 접근법에 대한 공동 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sup>54)</sup>

동 보고서에서는 각 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혁신적인 기업과의 이러한 상호 작용은 FSB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익에 대한 감독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혁신에 대한 능동적 접근 방식은 규제 당국이 내부 감독 목적(suptech)을 위해 새로운 Fintech 기술의 사용을 식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55)</sup>

다만,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조건이 특정 기관에 맞춰져 있어 모든 혁신기관을 포괄하지는 않으며,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의 표현을 사용(촉매, 혁신 연구소, 혁신 프로그램, 태스크 포스, 헬프 데스크 등)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56)</sup>

이러한 정책들이 최근 2~3년 이내에 개발되어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므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통하여 혁신 촉진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자가 다른 당국의 접근과 경험을 관찰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감독 접근법 개발을 구상할 때 혁신 방법 및 브리지와 같은 국경 간 협력 기회를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sup>57)</sup>

54) *ibid*, pp.38-39.

55)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39.

56) *ibid*, p.39.

57) *ibid*, p.39.



다음 [ 표 11 ]은 동 보고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각국 혁신주체별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현황을 인용한 것이다.

[ 표 11 ] 각국 혁신 주체별 감독당국 현황<sup>58)</sup>

Innovation facilitators			
	Innovation hub	Accelerator	Regulatory sandbox
	A place to meet and exchange ideas	"Boot-camp" for start-ups, culminating in a pitch presentation	Testing in a controlled environment, with tailored policy options
Australia	ASIC	ASIC	ASIC
Belgium	NBB/FSMA		
ECB	SSM <sup>33</sup>		
France	ACPR/AMF	BDF	
Germany	BaFin		
Italy	BOI		
Hong Kong SAR	HKMA	HKMA	HKMA/SFC/IA
Japan	BoJ/FSA		
Korea	FSC		FSC
Luxembourg	CSSF		
Netherlands	DNB/AFM		DNB/AFM
Poland	FSA		
Singapore	MAS	MAS	MAS
Switzerland	Finma		Finma
United Kingdom	BoE/FCA	BOE	FCA <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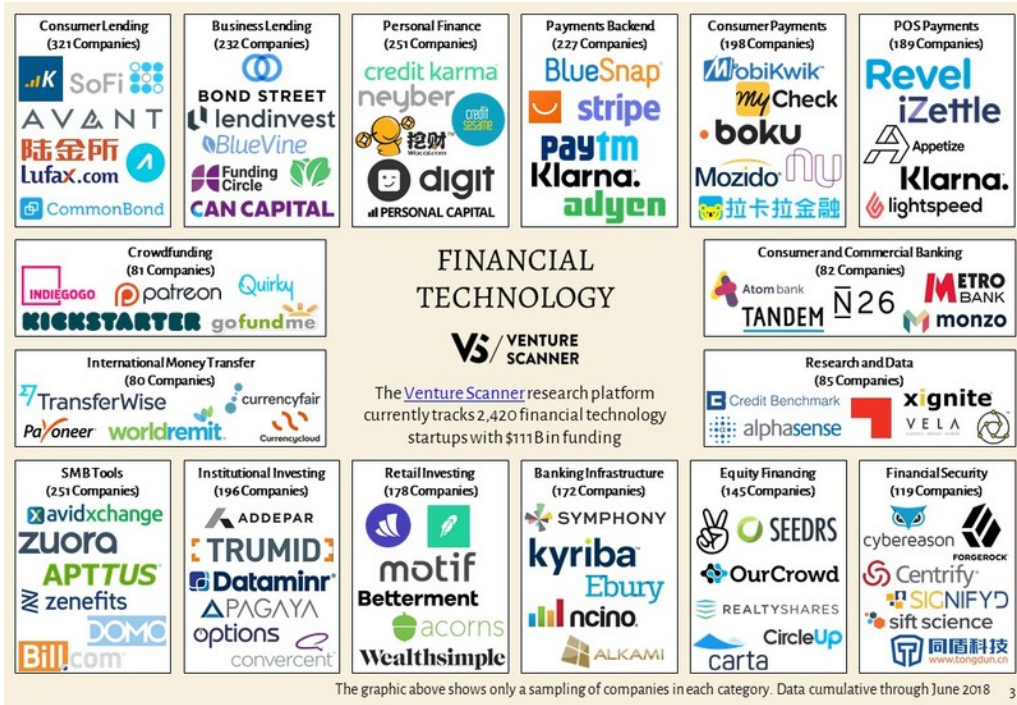
58) *ibid*, p.40.

## 제2절 국내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

### 1. 서설

해외 전문조사기관인 벤처스캐너사(Venture Scanner)의 2018년 상반기 금융분야 분석보고서(Mid-Year Financial Technology Exits Analysis)에 따르면 FinTech의 유형을 다음의 [ 그림 1 ]과 같이 16개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그림 1 ] 벤처스캐너사(Venture Scanner)의 FinTech 유형 분류<sup>59)</sup>



\* 출처 : 벤처스캐너

59) AUGUST 30, 2018 VENTURE SCANNER(www.venturescanner.com/blog/tags/fintech 2018.10. 22. 최종검색)

FinTech에 대하여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즉, FinTech 기업이 제공하는 FinTech 상품과 서비스를 금융소비자 등이 직접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과 이러한 FinTech 주체 간 FinTech 제공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장지원적 기능이 그것이다.

전자의 유형에는 소비자 등이 직접 이용하는 유형으로 지급결제(송금 포함), 클라우드 펀딩(투자 및 대출), 자산관리, 가상통화 등이 포함될 것이며.<sup>60)</sup> 후자에는 빅데이터 분석 및 신용 분석, 보안(인증 등), Reg-Tech 등이 포함다.

우선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금융시장의 일부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금융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후자는 시장지원적 기능이 주된 역할로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한국은행은 2018년 6월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외에는 FinTech가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스템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61)</sup> 다음 [ 표 12 ]는 해당 금융안정보고서에 서 밝히고 있는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현황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 표 12 ] 국내 핀테크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에 관한 금융안정 현안분석<sup>62)</sup>

[ 2018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			
< 금융안정 현안 분석 - 국내 핀테크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			
3.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가.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리스크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의 경우 본인인증에 사용되는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60) 윤민섭,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보고서 15-21, 2015.12, 21면

6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8.6, 105면.

6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8.6, 103~104면.

		<p>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오정보는 해킹에 의해 한번 유출되면 숫자, 문자 등의 인증수단과는 달리 재발급이 어렵고 유출효과가 영구적이어서 금융시장 인프라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핀테크기업들은 사이버보안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p>
	<b>P2P 금융</b>	<p><b>P2P 금융</b>의 경우 P2P업체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연체율 및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P2P 금융의 규모가 아직 작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관련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p>
	<b>크라우드 펀딩</b>	<p>반면 <b>크라우드펀딩</b>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P2P 금융에 비해 정보비대칭에서 유발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p>
	<b>암호자산</b>	<p>ICO를 통해 발행하는 <b>암호자산</b>의 경우 내재가치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데다 여타 금융자산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국내 ICO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암호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도 미약하여 현 시정에서는 ICO 및 암호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p>
	<b>로보어드바이저</b>	<p><b>로보어드바이저</b>의 경우 현재 비대면 투자일임이 허용되지 않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비대면투자일임이 허용되어 시장이 확대되면 금융거래의 전산화·자동화로 인해 거래 동조성이 강화되는 등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p>

	<p>나. 금융기관 핀테크 도입에 따른 리스크</p>	<p>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핀테크 활용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신규시장(중·저신용자, 신생기업 대상 대출 등) 창출보다는 기존 서비스 및 운영체제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핀테크 혁신 자체가 금융기관의 리스크 추구 행태를 강화하여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p> <p>다만 향후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잠재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썬파일러(thin filer) 및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진입은 금융시스템 내의 신용리스크를 점차 증가시키고 고객층이 겹치는 신용카드 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평가, 후선업무 등이 전산화·자동화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경우 사이버 리스크, 제3기관 리스크 등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p>
--	-------------------------------	--

이처럼 FinTech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 FinTech 산업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금융시장 전체의 규모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으로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6년도에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2018년 9월말 현재 누적금액이 669억원에 그치고 있으며,<sup>63)</sup> P2P 대출의 경우에도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누적대출액이 약 2조 495억원에 불과하다.<sup>64)</sup>

63)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자료 참조(최종방문일 2018년 9월 27일).

64) 한국P2P금융협회(P2Plending.or.kr) 자료 참조(최종방문일 2018년 9월 27일)

간편결제 및 송금의 경우에는 2017년 37조 3,420억원으로 2016년(11조 9,70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고,<sup>65)</sup> 2018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수단이 아닌 지급결제시스템의 간편화 또는 단순화에 불과하다. 또한, 기존의 금융결제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미 금융시장내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FinTech 서비스는 지급결제에서의 구체적인 절차만 달라졌을 뿐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고 금융시장이나 금융안정에 직접적인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기술의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소비자 편익 증대<sup>66)</sup>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금융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nTech의 유형에 따라 각각 구체적인 특성은 다르지만, ‘즉시성’,<sup>67)</sup> ‘탈지역화’,<sup>68)</sup>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sup>69)</sup> 등을 특성을 가진다.<sup>70)</sup> FinTech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FinTech는 장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에 영향을 줄 요인을 가지게 된다.

65) 서울파이낸스, “NHN페이코, '40兆' 간편결제 시장 전면전 예고”, 2018년 10월 12일자 기사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80> 2018.10.30. 최종검색)

66) 소비자편익과 관련된 사항은 윤민섭,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보고서 15-21, 2015.12, 19면 참조.

67) ‘즉시성’은 해킹, 오류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영향이 해당 금융회사나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구조도 상호간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금융분야에서의 사고의 결과는 지연되지 않고, 즉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의한 2010년 5월 6일 발생한 플래시 크래시가 2018년 2월 5일 또다시 발생하였는데, 2010년 플래시 크래시의 원인은 팻핑거라는 설이 있지만, 2018년 플래시 크래시는 알고리즘매매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알고리즘 등의 오류가 수정할 틈이 없이 즉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지급결제영역에서 보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인한 침해는 즉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신용카드복제로 인한 사고의 피해는 카드복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하였다면, 간편결제에서는 보안침해 후 즉시 또는 2일 이내에 피해가 발생한다.

68) ‘탈지역화’은 기술발전에 따라 전 세계의 금융시스템이 연동되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의 경우 국내 기업이 ICO 규제가 미흡한 국가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데, 해당 가상통화의 매매 등 거래는 전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기술의 발전이 물리적 거리, 심리적 장벽 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69) ‘비금융회사에 의한 금융서비스’은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P2P 대출의 경우 대부업자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지만 거래의 실질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신용평가, 대출중개, 추심 등 기존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본질적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혁신이 금융과 접목되면서 발생하는 특징이다.

70) 즉시성이 기술혁신으로 강화된 특성이라면, 탈지역화와 비금융회사에 의한 금융서비스는 만이 가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금융회사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FinTech 유형 중에서도 금융안정에 장단기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요인에 대하여 법적 분석을 시도해본다.<sup>71)</sup>

## 2.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sup>72)</sup> 크라우드펀딩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융형과 비금융형으로 구분되며, 금융형은 증권형과 대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 표 13 ]과 같다.

[ 표 13 ]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분류<sup>73)</sup>

유형		반대급부	계약의 종류
비금융형	기부형	없음	증여계약
	보상형	연계성 있는 물품등	선구매계약 또는 조건부 증여계약
금융형	대출형	이자	금전소비대차, 담보제공위탁계약, 원리금수취권매매계약
	증권형	이자 또는 수익	투자계약(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71) 제2절에서 대상으로 하는 분야는 제3차 전문가회의와 제4차 전문가회의를 통해 선정한 분야이다.

72)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2. 6, 187면;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에 대하여 이동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6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중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한 목적의 정치자금 모집이나 영화, 공연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모집, 나아가 소규모 창업기업의 자금 모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에게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라 칭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다. 성희활 교수는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 예술가, 사회운동가 등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비자, 후원자 등 불특정 일반대중(Crowd)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십시일반으로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 8. 31. 391면).

73) 윤민섭, “금융형 크라우드펀딩과 이용자 보호”, 21면의 내용을 일부 수정.

금융형 크라우드펀딩 중 증권형의 경우 2015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 금융’ 또는 ‘P2P 대출’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P2P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sup>74)</sup> P2P 대출은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계대부업자로 규율되고 있을 뿐 P2P 대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중 증권형과 대출형(P2P 대출)의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증권발행인 범위는 7년이하 업력의 창업·벤처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sup>75)</sup> 또한 발행금액은 연간 7억원, 투자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발행인의 범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375개사이며, 총 금액은 672억원으로 1개 기업당 평균 1.79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74) 최근에 P2P 보험이 등장하고 있고, 그 거래의 실질이 대출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P2P 대출’이 보다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P2P 대출에 관한 정의와 관련해서는 고동원,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8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5, 4~5면.; 성희팔,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6, 49~50면.; 윤민섭, “P2P 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452~453면. 참조

75) 증권발행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월 5일 개최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기에 향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8. 6. 5.)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sup>76)</sup> 이는 금융시장 중 직접금융분야에서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sup>77)</sup>

다만, 자본시장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규 지식이 부족한 발행기업 등이 원금보장을 강조하는 등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 아이피플스 사례 ]

2017년 11월 모바일게임업체인 (주)아이피플스는 ‘블루마블M’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와디즈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개시하였다.

- 아 래 -

**증권 발행 조건**

이자율	채권	만기
<b>연10.0%</b>	<b>일반회사채</b>	<b>6개월</b>
구좌당 가격	100,000원	
투자 가능 금액	최소 100,000원 (1구좌)	
만기일	2018.06.15 금	
상환방법	만기일시	
발행 예정 구좌 수	7,000 구좌	
펀딩 시작일	2017.11.10 금	
펀딩 종료일	2017.12.05 화	
증권 입고일	2017.12.15 금	

● 모집주기에 따라 최대 7억원까지 증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출처 : 와디즈 홈페이지



76)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 자료 참조(최종방문일 2018년 9월 27일).

7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에 기업이 직접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13조 4,574억원인데, 이조차 전월대비 1조 4,923억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한다(금융감독원, “18.8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보도자료, 2018. 9. 28.)

또한 게임의 다운로드 수에 따라 추가금리를 200%까지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이후 ‘모두의 마블’ 등과 같은 유사게임에 밀려 매출 부진 및 경영난이 발생하여 만기상환일(2018년 6월 15일) 1개월 전에 투자자들에게 상환연기 등을 통보하였고, 결국 채권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sup>78)</sup>

문제는 투자자와 발행기업간 의사교류과정에서 발행기업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 다 음 -


 **아이피플스**  2017.11.13

안녕하세요. 부루마블M의 창업자인 유제정이사입니다.  
먼저 저희 부루마블M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을 잘못 올렸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6개월만기 원금보장형채권이므로, 원금과 연이율 10%는 상환이 보장 됩니다.  
추가금리는 다운로드 수에 의해서 보상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최고의 게임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 게임포커스 2018년 6월 12일자 기사, “역대급 투자수익률 제안, 아이피플스 클라우드 펀딩 먹튀 논란...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보호 필요”<sup>79)</sup>

위와 같은 사례에서와 같이 FinTech 기업의 관련 금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은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에 대한 시장 형성원리와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78) 세계일보, “‘원금보장’ 된다더니 부도처리...클라우드펀딩 '시한폭탄'”, 2018년 6월 20일자 기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80620003395> 2018.10.30. 최종검색)

79) 와디즈의 홈페이지는 투자자와 발행인간 게시판을 클라우드펀딩 종료 후 직접 투자자만이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전환하여 기사에서 재인용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정상적인 제도 구축과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나. P2P 대출

P2P 대출은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P2P 대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금융시스템이나 금융주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기존 금융의 주된 역할은 자금 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자금을 중개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는 수수료 또는 예대마진을 수익원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P2P 대출은 기존 금융회사가 독점하던 예대마진을 투자자의 수익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시 시장 상황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3월에 72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년이 채 안된 2016년 12월에는 3,11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sup>80)</sup>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국P2P금융협회<sup>81)</sup> 회원사 기준, 2018년 7월 현재 누적 대출이 2조3256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2092억원) 대비 92.3% 증가하였다. 대출 유형별로는 신용대출 2009억원(전월 대비 180억원 ↑), 기타담보 5799억원(200억원 ↑), 부동산 담보 8309억원(623억원 ↑), 부동산PF 7137억원(1217억원 ↓) 등이다. 평균 연체율과 대출금리는 각각 4.38%, 14.38%이다.<sup>82)</sup>

최근 ‘대출금리조작’ 및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의존도 등과 같은 사안으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증가와 고수익기회 제공 등과 같은 P2P 대출의 장점으로 인하여 대출시장에서의 P2P 대출의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대출시장에서의 P2P 대출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1.60%에서 2016년 9.24%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sup>83)</sup>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P2P 대출의 시장점유율은 0.43%에 불과하지만,

80)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제정, 보도자료, 2017. 2.

81) 한국P2P금융협회는 주로 부동산 대출 중심의 중개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데 반해, 이로부터 최근 분리되어 나간 디지털금융협회는 신용대출 중심의 중개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잔액은 부동산 대출이 많은 P2P금융협회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82) New 1, “P2P금융협회, 7월 누적대출 2조3256억…전년비 92%↑”, 2018년 8월 9일자 기사(<http://news1.kr/articles/73394441> 2018.10.30.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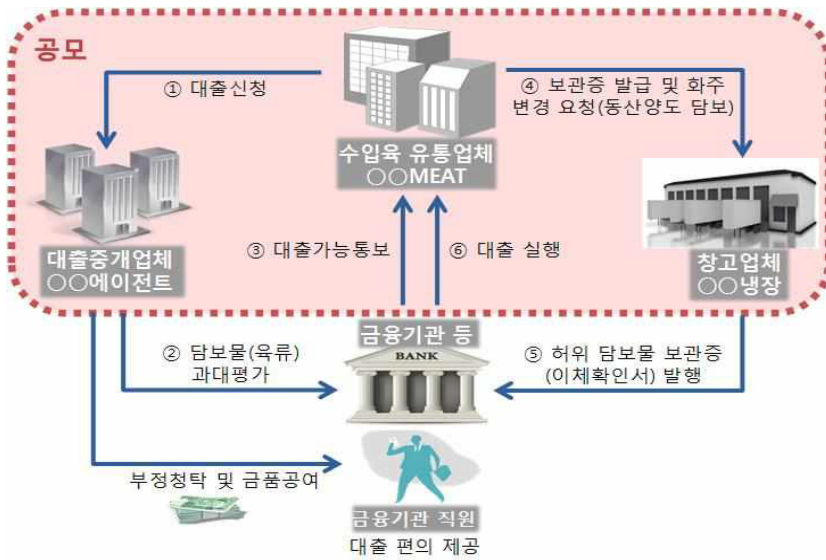
83) 금융연구원, 『P2P 대출중개시장 분석과 시사점』, 조사보고서 18-02, 2018., 27면

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에서의 P2P 대출시장은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스크로 인하여 기존 금융회사의 대출이 제한되는 영역에서 P2P 대출이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에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품목이나 가격을 속이는 방법, 수입육을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담보 제공하는 방법, 수입육 유통업체가 소위 ‘패밀리’로 연결되어 업체 상호간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약 5,700억원을 대출 받는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sup>84)</sup>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의 구조는 다음의 [ 그림 2 ]와 같다.

[ 그림 2 ]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구조도



\* 출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84)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5,700억원 대 육류담보대출 비리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2017. 9. 14.

동 사건으로 인하여 동양생명은 영업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다른 금융회사들은 육류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에 동산담보대출시장이 위축됨으로써 해당 대출 자격을 얻지 못한 수입육 유통업체들은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리고 동산담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P2P 대출업체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85)</sup>

P2P 대출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P2P 대출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sup>86)</sup> 플랫폼 실패<sup>87)</sup> 등과 같은 위험요인으로 인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sup>88)</sup> 등을 활용하여 P2P 대출에 대한 기관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도 금리차를 이용한 수익증대를 위해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자금으로 P2P 대출에 투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P2P 대출에서 발생한 위험이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최근에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중국에서는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1,836개의 P2P 대출 중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출잔액이 약 1.3조 위안으로 중국 상업은행 대출잔액의 약 1%에 이른다고 한다.<sup>89)</sup> 그러나 2018년 6월부터

85) 2016년 10월에 육류담보 P2P 대출을 시작한 디에셋펀드의 경우 창업 2년만에 약 600억이상의 대출중개를 성공시켰다.

86) P2P 대출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차입자가 목적외 용도 차입금을 사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루프펀딩 사건의 경우 P2P 대출 중개업체 대표가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용하고, 300억원대 차입자가 차입금을 목적외로 유용하여 중개업체 대표 및 차입자가 구속되었다(한국금융신문, “루프펀딩 대표 구속...P2P업계 또다시 '먹구름' 끼나”, 2018년 9월 17일자  
기사([http://www.ftimes.com/html/view.php?ud=2018091718070793728a55064dd1\\_18](http://www.ftimes.com/html/view.php?ud=2018091718070793728a55064dd1_18) 2018.10.30. 최종검색) ; 연합뉴스, “루프펀딩 투자금 300억 멋대로 쓴 건설업자 구속기소”, 2018년 9월 19일자  
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9/0200000000AKR20180919119200061.HTML> 2018.10.30. 최종검색) 등 참조)

87) P2P 대출 중개업체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 또는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채권행사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입자와 투자자간 채권·채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P2P 대출 중개업체가 관리하고 있어, 중개업자가 폐업 등을 한 경우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유실될 수 있고, 투자자가 직접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88) 자산운용자인 피델리스 자산운용은 P2P 대출 중개업체들과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대신 증권, NH투자증권 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이투데이, “대신증권, P2P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공방”, 2018년 8월 8일 기사(<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no=1650662> 2018.10.30. 최종검색))

89) 금융연구원, “중국 온라인 P2P 대출업체 파산 증가 및 시사점”, 『금융브리프』 27권 16호, 2018. 8., 22~23면.

약 2개월간 부도와 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총 228개의 플랫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sup>90)</sup>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하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빚을 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함께 전체 경제에서의 유동성 위기 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시장규모가 1%에 불과하더라도 문제는 기존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 등으로 이어져 가계 채무 및 불량채권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3. 지급결제

지급결제분야의 FinTech는 간편결제, 간편송금(해외송금 포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결제분야 는 기존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체 등의 지급결제방식을 보다 단순화시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91)</sup> 즉, 기존의 지급결제방식 과 경쟁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인 것이다. 삼성페이, 티플페이 등과 같은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과 같은 기존의 지급결제 수단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 간편송금도 은행 계좌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보완재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간편결제, 간편송금, 해외송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간편결제

간편결제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 즉 비금융사업자가 소비자의 카드정보 등과 같은 지급결제수단의 정보를 저장하여 이를 결제시 활용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기존

90) 인전타오, “중국 P2P 인터넷대출 시장 위기의 원인과 대응”,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8년 여름호, 자본시장 연구원, 2018., 7면.

91) 비트코인등과 같은 가상자산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급결제용으로 사용되는 가상통화도 결국 거래소 등에서 환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가치변동성이 있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 지급결제용 가상통화도 소비자를 포함한 거래당사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는 일반 사업자들이 신용카드정보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제사 소비자가 직접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러한 거래방법은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거래에서는 결제가 번거로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간편결제가 등장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비밀번호 등과 같은 결제번호만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간편결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결제시스템의 보완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편결제만으로는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간편결제에서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결제에서는 소비자가 실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실, 복제 등의 문제이외에는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의 관리소홀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다.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보안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PC 등만 조사하면 되는 등 원인을 찾는 것이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간편결제의 경우 어느 단계에서 보안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워졌다.

예를 들면, 2015년에 해커가 스타벅스를 해킹하여 소비자의 돈을 인출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sup>92)</sup> 보통 소비자들은 스타벅스가 발행하는 기프트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에 신용카드 등과 연동하여 자동충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커가 시스템을 해킹하여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자의 잔액을 0으로 만든 후 자동충전되면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아직까지도 어떠한 방식으로 해킹이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보안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으며, 간편결제 도입 이전에도 발생하였고,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sup>93)</sup>로서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은 지속적

92) 중앙일보 뉴욕, “스타벅스 모바일 결제시스템 해킹 개인정보·돈 빼가는 사기행위 기승”, 2015년 5월 15일자 기사([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81709](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81709) 2018.10.30. 최종검색)

93) 대표적인 글로벌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팔의 경우 2014년 3분기 평균 부정사용율은 0.3%에 달한다(이투데이, [페이팔에 가다] 페이팔 “부정사용률 0.3% 유지...전세계 리스크관리 직원 500명”, 2014년 11월 18일자 기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no=1021469> 2018.10.30. 최종검색))

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보안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간편결제에 대한 소비자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간편결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경우, 사용상의 편리성에 치중하여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간편결제의 구조나 참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회사 및 사업자가 보안침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간편결제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3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영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뒤 간편결제를 이용하여 1~2일 사이에 약 3,000만원치를 구매한 사건이 있었다. 간편결제를 통해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신용카드사 및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처음에는 배상을 거부당하였다가 이후에 관련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신용카드사가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하였으며, 간편결제 사업자도 피해액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4)</sup>

## 나. 간편송금

기존 송금의 방식은 이용자가 은행 또는 ATM기를 찾아가거나,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이체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존재하였다. 간편송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인데, 간편송금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간편송금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업자의 앱 등을 활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추심이체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sup>9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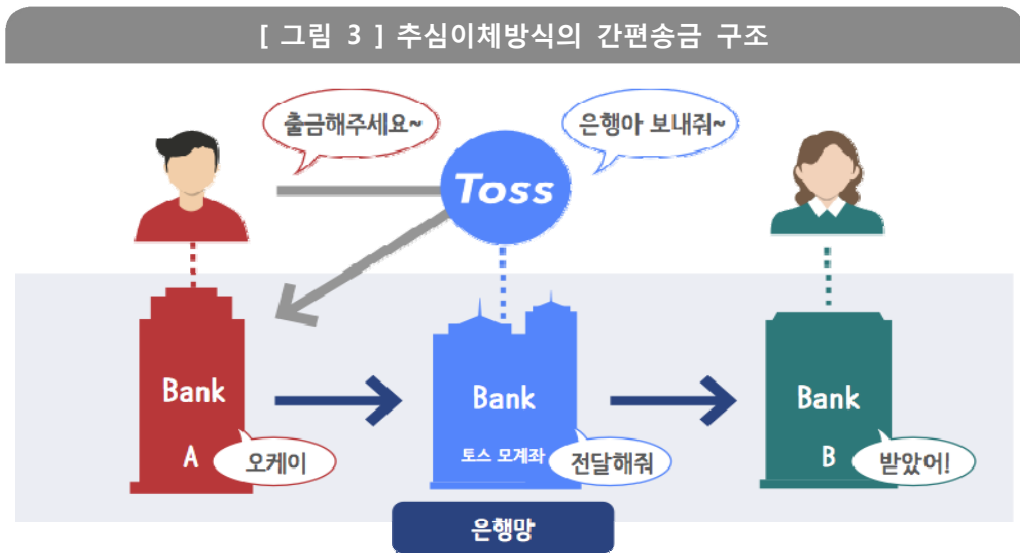
94) 동 내용은 필자가 ‘궁금한 이야기 Y’ 담당 PD와 7월 24일에 인터뷰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다.

95) 최근 은행 등도 공인인증서등을 사용하지 않는 간편송금앱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서 FinTech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문에서는 은행의 간편송금앱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전자의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일종의 선불금 등을 충전하는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및 계좌로 환불하는 방식으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96)</sup> 동 방법은 선불금을 충전하는 단계가 기존의 송금방식 또는 후술하는 추심이체방식의 간편송금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전자화폐보다 절차 및 요건 등이 간단하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후자는 ‘토스’라는 사업자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활용한 간편송금방식인데, 지급인이 토스에게 추심권한을 부여하고, 토스는 부여받은 추심권한으로 지급인의 계좌에서 지급인이 지시한 추심금액을 토스의 계좌로 이체한 후 지급인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이다. 과거 카카오페이가 동일한 방식으로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자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다음 [ 그림 3 ]은 추심이체방식의 간편송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 출처 : 토스 홈페이지

96)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거래 현황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18, 3면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604](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604) 2018.10.22. 최종검색).

2018년 8월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약 7개 사업자가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7) 각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현황은 다음 [ 표 14 ]와 같다.

[ 표 14 ] 간편송금 관련 주요 서비스 현황

구분	등록단계 본인인증 방법	송금 가능한 방법	송금시 비밀번호 정책
비바리퍼블리카	ARS본인인증, 예금주 조회 + 1원 입금 적요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	계좌번호, 회원 전화번호, 비회원 이메일·메신저+이름	비밀번호, 지문 인증
네이버	ARS인증+기존계좌활용 (테스트 입금)	전화번호+실명, 이메일주소+실명	비밀번호, 지문 인증
쿠콘	계좌검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	계좌번호+이름, 휴대폰 번호	거래승인번호, 지문 인증, 홍채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계좌 점유인증(1원 전송 후 적요 확인)	계좌번호, 카카오톡 메신저	비밀번호, 지문 및 생체 인증
NHN페이코	예금주조회, ARS 인증, 본인계좌 점유인증	은행명+예금주명+계좌번호, 휴대폰 번호+이름	비밀번호, 지문인증
엘지유플러스	공인인증서 인증, ARS 인증(입금 금액 확인)	계좌번호, 전화번호+이름	비밀번호
핀크	휴대폰본인확인, 계좌번호+예금주+비밀번호, 등록한 PIN번호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수취인 계좌 번호+이름검증)	비밀번호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2018. 8. 15.

9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2018. 8. 15., 8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561](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561) 2018.10.22. 최종검색)

위의 7개사 중 토스를 통한 간편송금은 2015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누적 송금액이 18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점효과로 인하여 카카오페이와 함께 간편송금시장의 대부분을 점유(18.5말 금액기준 96.4%, 건수기준 97.0%)하고 있다.<sup>98)</sup>

간편송금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간편결제와 동일하게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해킹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sup>99)</sup> 간편송금 사업자 또는 간편송금앱에 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간편송금 서비스체계 전체와 관련해서 보안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서 간편결제에 살펴본 사례에서 보듯이 간편송금을 활용한 결제의 방식으로도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간편결제와 달리 간편송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선불금 미상환액의 증가와 건전성 악화가 그것이다. 이 2가지 문제는 상호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불금 미상환액은 선불금 충전방식의 간편송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소비자가 선불금을 충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선불금을 별도 예치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환급을 청구한 경우에만 상환하면 된다.<sup>100)</sup>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4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선불금을 예금 및 예치금으로 보지 않고, 전자상품권과 같은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보기 때문이다.<sup>101)</sup>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7개 사업자의 미상환잔액은 1,165.5억원으로 간편송금 이용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다.<sup>102)</sup>

98)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18. 8. 15., 13면.

99)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18. 8. 15., 18면.

100)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제1항에 따라 미상환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10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지급수단으로만 구분할 뿐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102) ('16년) 236.9억원 → ('17년) 785.5억원 → ('18.5말) 1,165.5억원(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18. 8. 15., 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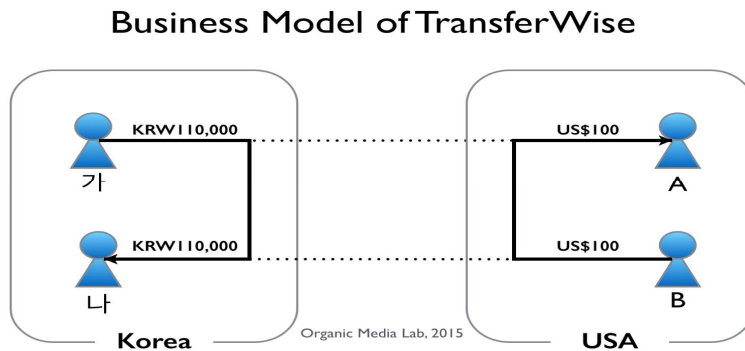
그리고, 건전성 악화의 문제는 간편송금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간편송금 이용건수가 증가할수록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적자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도 및 폐업에 이르는 경우 선불금의 대부분이 이용자에게 반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다. 해외송금

기술혁신에 따라 기존 금융시스템 즉,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해외송금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이 아닌 비금융회사를 이용한 P2P 해외송금,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등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P2P 해외송금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려는 자와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하려는 자를 플랫폼을 통해 연계하여 실질적으로는 해외송금이지만, 형식적으로 국내송금으로 보아 환전수수료 등을 낮추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 [ 그림 4 ]는 트랜스퍼와이즈사의 거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4 ] 트랜스퍼와이즈 거래구조



\* 출처 : Organic Media Lab. 2015

위의 도식은 트랜스퍼와이즈의 거래구조를 매우 단순화한 것인데, 실제로는 시스템을 통한 매칭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라는 사람이 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트랜스퍼와이즈에게 해외송금을 요청하고, 송금금액을 원화로 이체하면, 트랜스퍼와이즈는 미국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으로 매칭하게 된다. 위 [ 그림 4 ]에서 ‘나’는 1인이 아니라 수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A’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외화 송금 및 수령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해당 금액을 매칭시켜 후 각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이다.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은 국내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통화를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시킨 다음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매각한 후 출금하는 방식이다.

P2P 해외송금 및 가상통화 해외송금 등은 기존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에서 전제하고 있는 외국환거래의 틀을 벗어나 있다. 즉,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 법률적으로 ‘환치기’라는 무등록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다.<sup>103)</sup>

#### 4. 자산관리

FinTech에서 자산관리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등도 있다.

##### 가.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에 기반하여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103) 2018년 1월 관세청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하였다.(관세청,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보도자료, 2018. 1. 31)

구성'하고 '리밸런싱(재구성)'하며, '운용'해주는 온라인상의 자산관리서비스"104)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형은 운용형, 자문형, 하이브리드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별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 표 15 ]와 같다.

[ 표 15 ]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형

구분	유형 1. 운용형 (Online-based Portfolio Manager)	유형 2. 자문형 (Monitor&Give Suggestions)	유형 3.하이브리드형 (Technology-augmented Humans)
주요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적 자산 배분 후 이에 맞춰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li> <li>· 리밸런싱, 최적 세계 전략 등의 서비스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 포트폴리오 모니터 및 정기적 투자자문 제공 (투자주체는 고객)</li> <li>· 저성과/고비용 상품 교체, 리밸런싱 제안 등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어드바이저 판단으로 자문·운용 업무를 수행하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li> </ul>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AUM 기준 % 수수료 부과 (0.15%-0.5%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월정액 수수료 부과(5달러-15달러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정액, AUM 기반 수수료 모두 활용</li> </ul>

\* 출처 :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온라인 자산관리산업 동향 및 시사점, 2014.7.8

국내의 로보어드바이저는 이제 초기 단계로서 투자자에게 자산구성 등을 추천하는 자문형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추천뿐만 아니라 자산운영까지 직접하는 일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고객 및 자문인력의 참여 여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 표 16 ]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을 4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104) 이근영, “국내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동향 및 현황 분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6호 (2016. 4), 38면.

[ 표 16 ]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 구분

투자 주체 활용 정도	고 객(자문형)	금융회사(일임형)
RA를 Back office에서 활용	▪ (1단계) 자문인력이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	▪ (2단계) 운용인력이 프로그램의 자산 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
RA가 Front office에서 서비스	▪ (3단계)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 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	▪ (4단계)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

\*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2016.3.24

2018년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i)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ii) 자기자본 40억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4단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sup>105)</sup> 이에 따라 8개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위원회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였으며, 이들 로보어드바이저는 즉시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따른, 담합 및 소비자차별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sup>106)</sup>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담합을 주요의제로 다룬 바 있으며,<sup>107)</sup> 구글의 딥마인드(DeepMind)도 인공지능 간 담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sup>108)</sup>를 발표하였다.

105)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개정·시행”, 보도자료, 2018.6.27.

106) 이와 관련해서는 서원석,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의 침해에 관한 유형과 법적 과제”, 『상사법 연구』 37권 제1호, 상사법학회, 2018. 참조

107) OECD, Algorithms and Collusion-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2017), at (<http://www.oecd.org/daf/competition/Algorithms-and-collusion-competition-policy-in-the-digital-age.pdf> 2018.10.22. 최종검색)

108) Joel Z. Leibo · Vinicius Zambaldi · Janusz Marecki · Marc Lanctot · Thore Graepel, Multiagent Reinforcement

만약,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피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즉, 2010년과 2018년에 발생한 플래쉬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분야 FinTech에 대한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 나.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일명 ‘가계부 어플’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로보어드바이저의 3단계와 유사하나,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등과 같은 일반 금융상품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뱅크샐러드’, ‘핀크’, ‘비즈니스가계부’, ‘브로콜리’ 등과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는 이용자의 계좌정보 및 문자메시지(신용카드 결제문자 등) 등을 토대로 이용자의 자산현황을 분석하여 패턴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는 자산현황 및 소비(또는 투자) 패턴, 금융상품 분석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 금융상품도 여·수신 상품 및 보험상품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범위가 단순 추천에 그치고 있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

Learning in Sequential Social Dilemmas, Proceedings of the 16<sup>th</sup> Conference on Autonomous Agents and MultiAgent Systems(AA-MAS 2017)(S. Das et al. eds., 2017)  
(<https://storage.googleapis.com/deepmind-media/papers/multi-agent-rl-in-ssd.pdf> 2018.10. 22. 최종검색;  
<https://arxiv.org/pdf/1702.03037.pdf> 2018.10. 22. 최종검색).



## 5. 가상통화

가상통화가 발행되는 구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sup>109)</sup> 그 발행 목적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 가상통화마다 발행구조나 기술방식 등이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모든 가상통화를 동일시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가상통화에 관한 법적, 경제적 정의를 일원화하거나 통일할 수 없는 상황은 각국의 관련 감독 당국이나 금융당국이 가상통화에 대한 그 법적·정책적 대응을 달리하는 것과도 연계되어 있다.

우선 용어 사용 측면에서 본다면, 가상통화는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왔으나, 최근 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sup>110)</sup>에서는 “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로 두 용어를 병기하여 쓰기로 결정하였다.<sup>111)</sup> 아직은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가상통화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2018년 6월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변화를 감안하여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112)</sup>

가상통화는 실물경제에서 자산적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서 향후 그 활용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통화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자적 지급결제수단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선불저자지급수단 등이 법적으로 그 가치가

109) 김명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 『Legislative Issue Brief』, 한국법제연구원, 2017.11, 1면; 이지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 『Issue&Trend』 Digieco, BC카드 디지털사업연구소, 2017. 7. 12., 5~6면; 금융위원회, “디지털화폐 TF 제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6.11.17., 2면; 금융동향센터, “비트코인의 진화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주간 금융브리프』 24권7호 국제금융이슈, 금융연구원, 2015.2.7~2.13., 12면.

110) 2018.6.24.(일) ~ 6.29.(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로 한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 대표),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이 참석하였다.

111) 금융위원회, 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보도자료, 2018, 7, 1~2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561](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561) 2018.10.22. 최종검색)

11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101면.

통화와 연동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가상통화의 가치는 기존의 통화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 또는 투자자의 기대,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기성 자금유입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켜 향후 가격 급락에 따른 대규모 투자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sup>113)</sup> 이외에도 가상통화의 대부분을 일부 참가자가 독점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가 높으며, 최근 해킹 등의 보안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운영 리스크도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여 가상통화에 투자한 경우<sup>114)</sup> 가상통화시장과 기존 금융회사간 연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sup>115)</sup>

## 6. 인 증

인증은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융안정성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즉 인증제도에 대해서 소비자가 신뢰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금융안정성의 저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금융거래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인증방법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대면거래에서는 신분증과 비밀번호 등을 인증방법으로 활용하였으나, 전자금융이 발전함에 따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이 인증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휴대폰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도 인증수단으로 채택되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체정보도 인증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113)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2018.7. 39면.

114) 가상통화 관련 정보업체인 CoinDesk의 2018년 1월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가상통화에 투자한 약 2,700여명 중 대출이나 마진거래를 통해 가상통화를 구매한 비중은 20%에 달한다고 한다(동 자료의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2018.7. 42면에서 재인용함)

115)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2018.7. 42면.

인증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인증제도의 체계 및 관련 사업자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보안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인증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체정보의 경우에도 탈취 및 해킹이 가능하고, 이렇게 유출된 생체정보는 영구성을 가진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 및 FinTech 사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휴대폰 인증의 경우 타인명의의 휴대폰이 개설되어 있으면, 해당 휴대폰을 통해서 간편결제를 타인명의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간편결제에서 살펴본 피해사례도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이 원인이었다고 한다.<sup>116)</sup>

인증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직접 인증체계를 전담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사업자로 구성된 인증체계가 각각 구축되어 있어, 소비자가 각 FinTech 사업자별 인증수단 전부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제에서는 소비자가 인증수단 전부를 관리하여야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관련 보안침해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인증체계상 허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비자 및 이용자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 7. Reg-Tech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기존 금융사업을 영위하거나 FinTech 등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규제 및 법규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sup>117)</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레그테크는 기술혁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FinTech와 유사하지만, FinTech가 주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레그테크는 금융회사 및 FinTech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16) 동 내용은 관련 업무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임

117) 금융감독원, “「레그테크(Reg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17.10.19.

레크테크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등 다양한 IT기술이 활용되는 것으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 등에서도 레크테크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 레그테크는 이미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도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에서의 시장감시시스템도 레그테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산업, 금융상품, 금융관련 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기존의 컴플라이언스<sup>118)</sup>만으로는 금융회사의 규제준수가 어려우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활동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FinTech 사업자의 경우 금융관련 규제에 익숙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회사 및 FinTech 사업자의 규제준수는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효과적인 규제준수를 위해 레그테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10월 금융감독원 및 금융연구원 공동으로 「레그테크(Reg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를 개최하였고, 2018년 9월 금융감독원은 레크테크의 일환으로 Machine Readable Regulation(MRR)<sup>119)</sup>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sup>120)</sup>

레그테크는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Reg-Tech를 통해 사전 예방 또는 피해규모 축소 등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레그테크를 통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및 감독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 금융상품 및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18)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기업 스스로가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규 및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119) 금융규제(예: 전자금융감독규정)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기계어)로 변환

120) 금융감독원, “「핀톡(FinTalk)」, 업계와 금융감독원의 생생 현장토론”, 보도자료, 2018.9.10.

### 제3절 금융안정 관련 제도적 기반의 변화 필요성

#### 1. 금융혁신기술보유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지, 시장에 진입해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법제도상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해당 업무 등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 및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수많은 기업이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FinTech 분야 중 크라우드펀딩, 지급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과 같이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야에 대하여서는 기업의 시장진입 현황을 알 수 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중 증권형의 경우 14개사가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P2P 대출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175개이다.<sup>121)</sup> 그러나 P2P 대출의 경우 크라우드연구소<sup>122)</sup>의 자료에 따르면 P2P 대출 중개업자 중 32개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P2P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23)</sup>

지급결제의 경우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간편결제는 39종, 간편송금은 14종이 시장에 출시되어 운영 중이라고 한다.<sup>124)</sup> 자산관리 중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2017년부터 테스트베드를 운영 중인데, 1차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업체 수는 34개사이며, 2차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업체 수는 20개사이다. 기타 자산관리의 경우에는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18년 3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2017 대한민국 기업편람」<sup>125)</sup>에는 총 228개 FinTech 기업이 수록되었는데, 해외의 경우 FinTech 기업은 미국 약 5,000개사, 중국

121) 2018년 8월 기준, 크라우드넷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자료 참조.

122) 펀딩플랫폼이라는 P2P 대출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연구소(<http://www.crowdinst.com/>)로 P2P 대출에 관한 시장 보고서를 매월 발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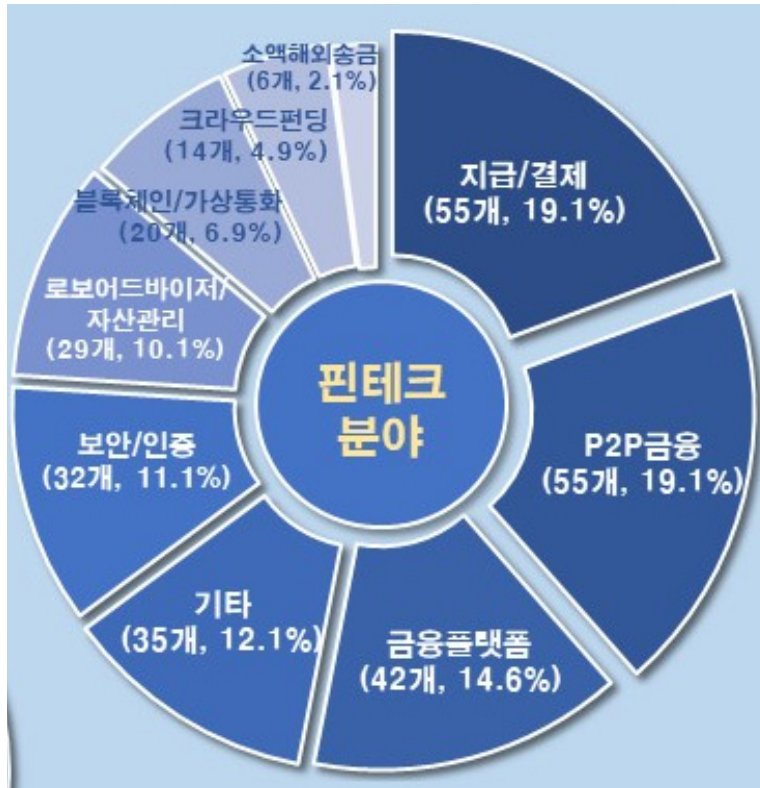
123) 크라우드연구소, 2018 P2P금융 성장보고서(<http://www.crowdinst.com/>)

124) 금융위원회, “「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18.4.26.

125)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2017 대한민국 기업편람」은 국내 유관기관 및 협단체, 금융사, 개별 기업 등을 통해 조사된 상용서비스 보유 기업 약 350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회신한 총 288개 기업의 상세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약 3,100개사, 영국 약 1,600개사, 일본 약 300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26)</sup> FinTech 분야별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현황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기업의 숫자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그 외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은 숫자이다. 이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게끔 유도하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규제의 불명확성에 있다.

126)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대한민국 기업 편람』 최초 발간”, 보도자료, 2018.3.29.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법규에서 포지티브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금융관련 규제체계는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각 업별 법령에 따라 행위별 규제가 아닌 업별 규제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금융관련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한편, 일반적인 법원칙을 살펴본다면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헌법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포지티브규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해서는 안된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sup>127)</sup> 이에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나,<sup>128)</sup> 아직까지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혁신기업들의 시장진출이 늦어지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4차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업의 창업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 법령에서 규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현행 법률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기본 법원칙에 입각한 원칙중심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령 개정시 시장의 주체자로서 사업자인 플레이어 내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는 관계부처가 법령 개정시 진술자 또는 의견조회 형식으로만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현행 포지티브규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향후 관련 법령의 적용과 시범사업의 운용 결과 평가,

127) 윤민섭, “규제 샌드박스관련 법률(안)의 소비자보호체계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한국소비자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8. 4. 26., 6면.

128) 국회법제실,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2017. 12. 22., 8~9면;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2017. 10. 2~15면;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보도자료, 2017. 3. 20. 등.

이를 통한 법령 제·개정 작업 단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등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지위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관련 법령을 원칙중심 규제에 기반한 행위중심규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업별 규제 방식에서는 해당 업종 관련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면 관련 업종에 대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업별 규제 방식에서는 FinTech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하여 모두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 생기기도 하며, 불합리한 중복 규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행위 중심 규제를 취함으로써 행위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규정하게 되면, FinTech 기업의 시장주체자로서의 행위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등이 규제대상이 된다.

셋째, 법률해석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법규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최대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금융당국 내지 감독담당자의 적극적 해석이 없으면 해당 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현행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금융법령 체계에 따른 소극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사후적으로 소명을 통하여 면책될 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행정을 할 만한 동기부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후적 책임 면책 제도뿐만 아니라 법에 일정한 행위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 내지 당국 담당자의 면책행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책임이 면탈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서의 적극적인 면책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FSB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금융당국의 담당자 등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전문가의 영입,



실무계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 체계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금융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과 규제환류체계의 도입 가능성

### (1) 금융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

일반적 금융안정성은 은행의 시스템위험과 금융정보 안정성을 바탕으로 거시적 안정성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신뢰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전통적 대출이 아닌 P2P 대출의 시장점유율이 9%가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차입자 및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이용자는 개인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즉, 기업과 기관투자자 등이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좌우하는 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외국인도 사실상 외국계 사모펀드 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투자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금의 규모 등도 개인 예금자보다 법인 예금자의 규모가 크며, 대출규모 또한 법인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관련 법령 및 제도의 규제 방향성이 개인이용자 즉,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강조되는 이유는 산업의 근간이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 중 펀드의 경우 그 기본은 금융소비자이며, 은행이 예대금마진의 근원도 개인의 저축예금이다. 보험 및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수익의 원천은 금융소비자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안정성 또한 저해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금융안정의 요소로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 유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 대한 FinTech의 영향 분석시에도 금융인프라에 대한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29)</sup>

129)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8.6., 서문 및 103면.

정리하면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시장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는 국가의 금융시스템 즉 금융관련 규제, 금융산업 및 금융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산업 및 금융인프라의 세부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금융관련 규제를 신뢰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신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에 대한 신뢰는 금융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규제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경우 이는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은행이라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깨진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항상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규제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국가의 ‘금융안정’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금융안정’의 평가하는 객관적 요소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라는 것은 사건의 발생유무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변수이다. 소비자는 금융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의 원인보다는 그 결과에 집중하는 측면이 강하며 해당 사건당사자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로 일반화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P2P 대출에서 발생한 사기 등은 불건전 영업을 하는 일부 업체의 문제이지만, 투자자나 금융소비자 시각에서는 P2P 대출산업 전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단하게 되며, 이에 해당 업종 내지 유사 업종에서의 투자나 금융거래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sup>130)</sup>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금융안정성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sup>131)</sup> 오히려 다음에서 제시하는 제도적 접근법을

130) 관련 사업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P2P 대출에서 발생한 사기 등의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131) 동 내용은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업무를 수행하였던 담당자 인터뷰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시장참여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2) 규제환류체계 도입과 금융소비자 참여의 제도화 가능성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변동성이 큰 요소이지만, 향후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요인이다. 소비자 신뢰가 낮은 금융분야에 대한 감독 및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신뢰를 ‘금융안정’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융안정관련 지표 등을 해석하는 요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규나 규제는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이는 현실에 맞는 법제를 적용하려는 각계각층이 관련 입법의 제·개정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법규의 현실화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은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규제의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환류체계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규제의 유효성 평가 및 조치 절차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규제의 목적 및 소관부처에 따라 규제환류체계의 구조 및 절차는 상이하긴 하나 대체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행 규제환류체계는 Bottom-up 방식이 아닌 소관부처의 장이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참여를 인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하방전달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한계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현재 금융분야에서의 규제환류체계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규제의 변화나 혁신이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유관부서, 금융연구원 및 자본시장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사업자, 학계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융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등 다양한 FinTech 분야 시범사업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나 투자자에 대한 절차상의 의견 개선 기회는 주어져 있지 않다.

그 단적인 예로 금융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는 필수요건이 아닌 반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계 대표는 필요요건이다.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FinTech 서비스나 상품의 직접 이용자인 금융소비자나 투자자의 의견청취 기회를 보장하고, 각 협의기구 내지 심의, 의결 기능이 있는 각 조직 구성에 해당 FinTech 사용자의 참여를 필요요건화 할 필요가 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한편, 핀테크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운용과 같은 제도 운용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후평가·관리제도에 대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입법적 규제환류체계에 적용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시장참여자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하여서도 기존의 감독위주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탄력적인 규제 적용에 대한 실무적 판단, 시범사업 및 예비인가에 대한 합리적 결정, 시장참여자가 규제 관련 정책/입법안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 보장, 규제환류체계의 도입을 통한 규제개선 방안의 도출 등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당국 제도 운용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을 바꾸어 제4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 제3장 금융안정 관련 현행 법제 분석

제1절 서 설

제2절 클라우드펀딩

제3절 지급결제

제4절 자산관리

제5절 가상통화

제6절 인 증

제7절 Reg-Tech





## 제3장

# 금융안정 관련 현행 법제 분석

### 제1절 서설

기술혁신에 따른 핀테크유형별 적용 법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라우드 펀딩과 지급결제, 자산관리, 가상통화, 인증, Reg-Tech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현행 규제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몇 년간의 규제 적용 경험을 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개정 입법안들이 추진 중이다. 또한, P2P 금융 중에서도 비금융대출중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P2P대출의 경우에는 법적 성격 모호하여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중이며, 관련 입법안들도 다수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가상통화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입법안들이 제출된 바 있으나, 가상통화 열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가 중개나 가상통화 매입·매출을 통한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상통화의 선순환적 시장구조가 확립될 때까지는 관련 법제의 개선에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각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Fintech 관련 금융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 특히, 신고·등록 및 인·허가의 요건은 주로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을 판단하는 방법은 주로 정량평가가 원칙이며, 사업목적의 건전성 등과 같은 정성평가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현재 Fintech와 관련된 금융규제는 금융 관련 법률의 특성상 법률의 제·개정 없이는 적정 규제가 이루질 수 없으며,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장 유사한 업태로 신고·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등록대상이 되었고, P2P 대출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된다. 이처럼, 해당 유형별 Fintech 서비스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낮은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반대로 진입규제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서의 Fintech 서비스 출현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언론을 통하여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즉, P2P 대출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불건전한 영업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P2P 보험의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져 경쟁 제한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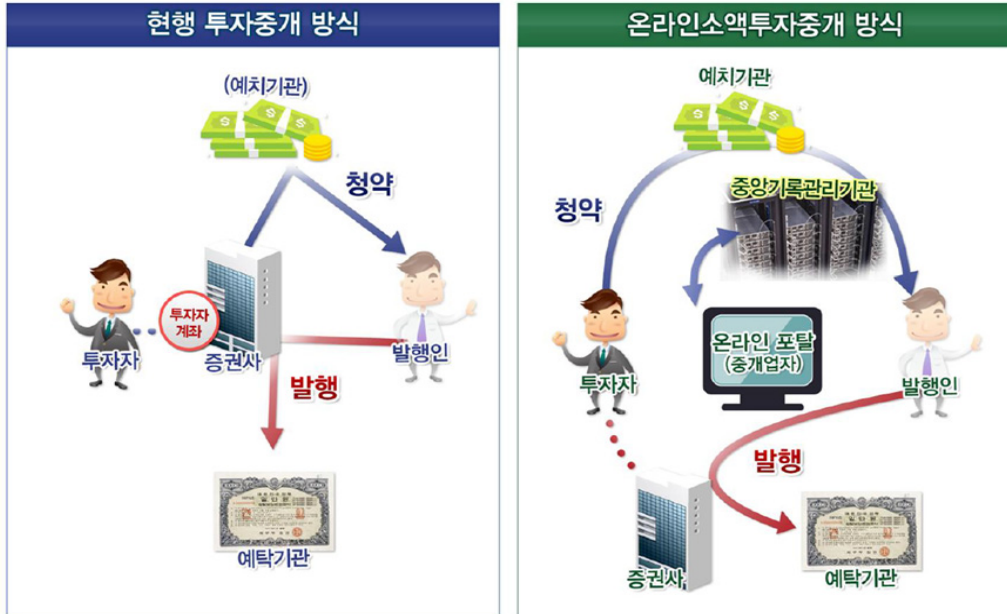
아래의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라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Fintech 서비스·상품들에 적용되는 법제 및 규제 현황과 관련 입법안을 소개함으로써 제4장에서의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제시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 제2절 크라우드펀딩

###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6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6년 1월부터 동 제도가 시행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본시장내 투자중개방식과 다른 개방식의 거래구조를 채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 그림 5 ]와 같다.

[ 그림 5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거래구조



\* 출처 : 권유이, “크라우드펀딩법안 주요내용”, 『2015대한민국 크라우드펀딩 컨퍼런스 발표자료 세션 2-2』, 2015.6.2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를 면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발행공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 표 17 ]와 같은 규제체계를 가진다.

[ 표 17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구 분	내 용
제4조 및 제9조제27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의 · 발행인의 범위
제5장 (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 16) 신설	·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제117조의3)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제117조의4) · 유사명칭사용금지(제117조의5)

구 분	내 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구조 등(제117조의6)</li> <li>· 영업행위 규제(제117조의7)</li> <li>· 청약증거금 관리(제117조의8)</li> <li>· 투자광고 특례(제117조의9)</li> <li>· 증권모집의 특례(제117조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제한</li> <li>- 발행공시에 관한 제119조 및 제130조 적용 배제 등</li> </ul> </li> <li>· 기재내용 사실확인 의무(제117조의11)</li> <li>· 부실기재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제117조의12)</li> <li>· 중앙기록관리기관(제117조의13)</li> <li>· 투자자명부관리(제117조의14)</li> <li>· 전자계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117조의15)</li> <li>· 검사 및 조치(제117조의16)</li> </ul>
제420조 및 제421조 제444조부터 제446조 및 제449조	·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등 검사 조치

현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상 문제점으로는 i) 발행인의 범위제한, ii) 발행 증권의 종류 제한, iii)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미흡, iv) 유통시장의 부재 등이 있다.

## 2. P2P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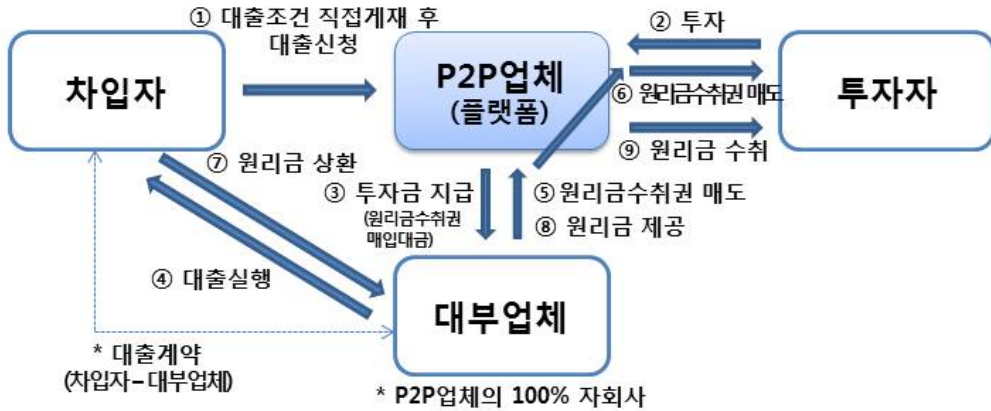
P2P 대출의 유형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직접대출형(직접체결형, 중개형), 간접대출형(원리금수취권매매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sup>132)</sup>, 현실적으로 간접대출형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원리금수취권형이 주류로 파악된다. 다만 최근에는 펀드라는 이름이 붙는 집합투자형도 일부 보인다.<sup>133)</sup>

132) 윤민섭, “非금융형크라우드펀딩의법적문제와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한국법학원, 2014. 6.), 10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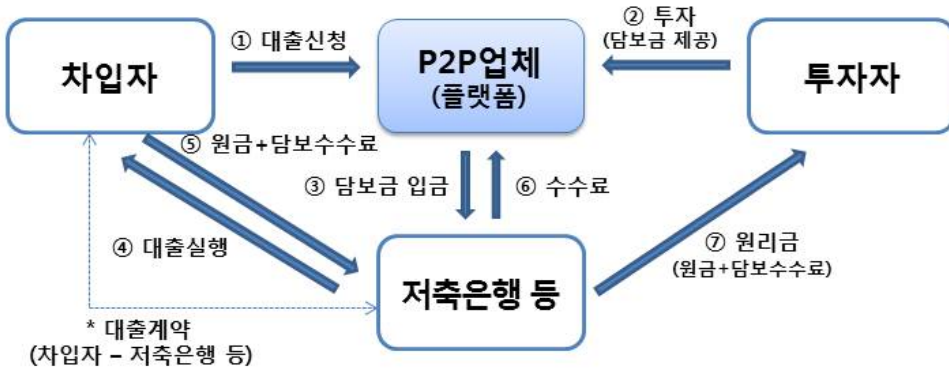
133) 성희환,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0권 제4호, 2016. 12, 50-51면.

국내 P2P 대출의 대표적인 유형인 간접대출형 P2P 대출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매매형과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유형별 거래구조는 다음 [ 그림 6 ] 또는 [ 그림 7 ]과 같다.

[ 그림 6 ] 원리금수취권매매형 P2P 대출구조<sup>134)</sup>



[ 그림 7 ] 담보제공위탁계약형 P2P 대출구조<sup>135)</sup>



134)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2016. 11.

135)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2016. 11.

현재 P2P 대출에 대하여서는 법률이 직접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서야 본격적으로 영업을 이루어진데 반해, P2P 대출은 적용 법률이 없는 가운데서도 활발한 영업을 이루어져 짧은 시간내에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넓게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으로서 유사한 양자가 이러한 법적 규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발행 증권이 주식과 채권으로서 적용 법률이 자본시장법이라는 점이 명백했는데, P2P 대출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이라는 점에서 적용 법률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P2P 대출 시장의 규모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함에 따라 정부로서도 선부른 규제보다는 육성 차원에서 지켜볼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을 감안한 점진적 규제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지도 방식이 채택되었다.

P2P 대출과 관련하여 규제체계의 경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201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하고, 2016년 7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약 3개월간 논의를 거친 후 동년 11월 2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sup>136)</sup> 동 가이드라인은 2017년 2월말부터 시행하였다.<sup>137)</sup> 이후 2018년 2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국회의 입법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2차 가이드라인은 1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제기된 사항 등이 보완되었다.<sup>138)</sup> 2차 가이드라인의 적용 연장 배경은 연체율의 증가와 부동산 관련 대출로의 쏠림 현상 등 위험 요인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업계의 완전한 자율적 영업을 보장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36)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 보도자료, 2016. 11.2.

137) 금융위원회,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 「P2P 대출 가이드라인」2.27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2017. 2. 27.

138)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보도자료, 2018. 2. 27.

다음의 [ 표 18 ]은 2017년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표 18 ] 2017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평 가
1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li> <li>-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li> <li>- 소득적격개인투자자(①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②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는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li> <li>-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 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상품에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례적인 조치이지만, 상품의 위험성에 따라서는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이기도 함</li> <li>○ 유사한 클라우드 금융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한도가 도입되어 있음</li> <li>- 차이점은 증권형의 경우 1개 발행업체당 한도와 모든 발행업체를 합한 연간 총투자한도가 있는 점에 비해, P2P 대출의 경우는 총투자한도가 없는 점이 특색</li> </ul>
2	투자자의 투자금과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	○ 투자금을 자산과 분리하여 공신력있는 금융사에 별도 예치	○ 일반적인 금융법상 투자자보호제도의 취지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
3	이해상충금지	○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4	투자 관련 정보의 게재 및 해당 내용에	○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구 분	주요 내용		평 가
	<p>대한 P2P 업체의 확인 의무</p>	<p>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등)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는 관련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주어짐</li> </ul>	

\* 출처 : 금융위원회,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 『P2P 대출 가이드라인』2.27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2017. 2. 27., 1~7면.

동 가이드라인은 1년의 시행 후에 2018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배경은 연체율의 증가와 부동산 관련 대출로의 쏠림 현상 등 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업계의 완전한 자율적 영업을 보장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①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부동산 관련 대출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부동산 PF에 대한 공시를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③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신용이 부실한 자가 P2P 대출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④ 시장의 요구가 컸던 투자한도 확대 수요를 수용하여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과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동 한도 확대를 인정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P2P 대출 가이드라인」개정안의 전문이다.<sup>139)</sup>

##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 1. 총 칙

- **(목적)** P2P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
  
-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함
  - 동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

139) 금융위원회,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 「P2P 대출 가이드라인」2.27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2017. 2. 27., 4~7면.

## 2.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

① (사업정보 제공) P2P대출의 구조, 누적 대출금액, 대출 잔액, 연체 정보는 월별로 게재(전월말 기준)하고, 재무현황(P2P대출정보 중개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인 경우), 대주주 현황 정보는 사업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

②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차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1.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 포함)
3. 차입자가 상환·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4.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5. 차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추심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

③ (투자광고) P2P 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

1.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수익률보장”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 또는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차입자에 관한 사항 (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 가치 및 추심절차 등을 포함)
3.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세율·세금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주요사항 (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율 등을 포함)
6. 동일차주\* 대출현황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투자자 재모집 상품인 경우 그 사실 포함)
  -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함
7.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

○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

1. 개인 신용대출 : 차입자 신용등급, 대출목적, 자산 및 부채현황,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소득 및 직장 정보, 상환계획
2.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 대표자의 신용등급, 대출목적,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현황, 매출현황, 연대보증 유무, 상환계획
3. 담보대출 :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선순위 채권 현황,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주소·등기·소유권이전 사항, 상환계획, 담보처분 계획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왜곡 없이 제공
-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

⑤ (영업행위) P2P 대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준수

1.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연계 금융회사로 우회하는 방식 포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자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말함
3.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것

- ⑥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
-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⑦ (투자한도) 투자자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도를 설정
-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외
  - (개인 투자자)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1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 단,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추가 1천만원
  -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4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 ⑧ (자료제공) 연계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

-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공
-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P2P금융협회에 통보

9 (법령과의 관계) P2P 대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

10 (유효기간)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관련 근거 법률이 없었으며, 연계금융업자인 대부업도 지자체 등록대상으로서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관리하기 위해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P2P 대출에 관여하는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즉, 직접 대출자금을 제공하는 P2P 대출 중개업자의 자회사들을 연계 대부업자로서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대부업감독규정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P2P 대출의 대부업자는 P2P 대출외의 일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감독규정 제10조제2항). 이는 기존의 대부업자가 자신의 부실위험채권을 투자자에게 이전시킬 목적으로 P2P 대출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up>140)</sup>

140) 김수봉, “부동산 P2P 대출의 활성화 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8, 27면.

대부업 시행령
<p>제2조의4(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p> <p><b>1.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자금제공자”라 한다)</b></p> <p>2. 대부를 받으려는 자</p> <p>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 배를 말한다.</p> <p>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대부업 감독규정
<p>제10조(등록요건등) ②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다음 각호에 따른다.</p> <p>1.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대부업 (이하 이 규정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이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p> <p>2. 대부업자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이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p>

이처럼 P2P 대출에 직접 적용할 전문적인 개별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에 따라 P2P 대출이 발달하다 보니, P2P 대출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sup>141)</su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141)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모집금액 제한이나 투자금액 제한 등 다양한 투자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산업적으로 보면 투자 활성화에는 불리한 점도

그런데 P2P 대출의 경우를 보면, 2018년 가이드라인 연장안 발표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이 2016년말 1.24%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8년 1월말 현재 무려 7.96%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sup>142)</sup>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이 2017년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상반기에만 1179건을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sup>143)</sup>

한편 P2P 대출의 연체 외에도 중개업체의 부실, 횡령, 배임, 사기 등의 사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그 규모도 커져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P2P업체 3위인 루프펀딩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 대표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고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sup>144)</sup> 그리고 이 중개업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건설사 대표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300억원에 이르고 피해 투자자 수는 1만명이 넘는다.<sup>145)</sup>

P2P 대출의 규제체계상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P2P 대출 유형에 대하여 적용할 전문적 개별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P2P 대출에 대해서 연계대부업자는 대부업법으로, 중개업자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소비자과 직접 거래하는 중개업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 및 감독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제가 없더라도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2P 대출에서의 사기 및 횡령 등의 사건, 다른 자금조달 수단에 관한 규제(예를 들면, 자본시장법 등)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2P대출에 직접 적용할 관련 규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측면이 있다.

있으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즉,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

142) 앞의 금융위 2018년 보도자료.

143) 조선일보, “‘P2P 투자금 못받았다’ 민원 올해 1200건”, 2018년 9월 18일자 기사([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7/2018091703355.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7/2018091703355.html) 2018.10.30. 최종검색)

144) 시사저널e, “대출 규모 커지는 P2P금융,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뒷전’”, 2018년 9월 19일자 기사(<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9308> 2018.10.30. 최종검색)

145) 연합뉴스, “루프펀딩 투자금 300억 멋대로 쓴 건설업자 구속기소”, 2018년 9월 19일자 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9/0200000000AKR20180919119200061.HTML> 2018.10.30. 최종검색)

이처럼 P2P 대출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일정한 규제체계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무려 5개의 P2P 대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발의된 법률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 [ 그림 8 ]과 같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서는 장을 바꾸어 상술하기로 한다.

[ 그림 8 ] P2P 대출 관련 법률안의 발의일자별 발의 연혁<sup>146)</sup>

구분	발의 법률안	발의	발의 일자
1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sup>147)</sup>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2017년 7월 20일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up>148)</sup>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7년 2월 6일
▼			
3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sup>149)</sup>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년 2월 23일
▼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sup>150)</sup>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2018년 4월 13일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up>151)</sup>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년 8월 28일

146)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 등록된 각 의안을 검색하여, 법률안의 연혁을 필자가 정리

147)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의안번호 8120, 2017. 7. 20.

148)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787, 2018. 2. 6.

149)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의안번호 12093, 2018. 2. 23.

150)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의안번호 13052, 2018. 4. 13.

151)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102, 2018. 8. 28.



## 제3절 지급결제

### 1. 간편결제

간편결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었다. 국내에서 간편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가맹점 및 PG 사업자 등이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보유 및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맹점 및 PG 사업자 등의 결제정보 보유가 금지되었던 이유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개정전)

제18조 (정보유출금지)

-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간,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데이터(PVV)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원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회원정보에 대한 해킹, 회원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제18조제3항 신설)하면서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및 재무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결제대행업체에 한하여 결제정보를 보유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개정후)

제18조 (정보유출금지)

-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간,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데이터(PVV)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회원정보에 대한 해킹, 회원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 2. 간편송금

국내 간편송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심이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가. 추심이체

추심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거래<sup>152)</sup>의 한종류로서 소비자가 지급인, 간편송금업체가 수취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추심이체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실행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다.

다음 [ 표 19 ]는 추심이체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15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호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표 19 ] 추심이체 관련 법규 체계

구 분	투자한도
전자금융거래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p> <p>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p> <p>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를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意的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p>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p>제10조(출금 동意的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p>

구 분	투자한도
	<p>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p> <p>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p>
전자금융감독규정	<p>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방법 등) 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li> <li>나.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li> <li>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li> <li>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li> </ol> </li> <li>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li> <li>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하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li> </ol> </li> <li>3. 삭제</li> </ol> <p>②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화 녹취</li> <li>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li> </ol> <p>③ 지급인(출금계좌의 실지명의인을 포함한다)이 출금의 동의를</p>

구 분	투자한도
	<p>해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제1항 각 호의 출금 동의를 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li> <li>2.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li> </ol>

추심이체형의 경우 간편송금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간편송금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그로 인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간편송금서비스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나. 선불전자지급수단형

선불전자지급수단형은 간편결제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페이, 포인트 등과 같은 증표(선불전자지급수단)를 소비자가 구매하고, 해당 증표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송금이 이루어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sup>153)</sup>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제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물하기 등과 같은 증여가 금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하기 등의 방식으로 송금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 [ 표 20 ]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153)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표 20 ]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규 체계

구 분	내 용
전자금융거래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p> <p>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p> <p>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p> <p>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p> <p>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li> <li>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li> </ol> <p>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구 분	내 용
	<p>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p> <p>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p> <p>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p> <p>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p>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법 제2조제1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발행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p> <p>1.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p> <p>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p> <p>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p> <p>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p>
전자금융감독규정	<p>제42조(총발행잔액의 산정방법 등) 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총발행잔액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을 평가하여 이를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급보증, 상환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 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p>

구 분	내 용
	3.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한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간편송금에 있어서 전자화폐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이유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절차도 보다 복잡하다. 우선 전자화폐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나목)이면 되지만,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 5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2조제15호). 이외에도 전자화폐는 예금계좌 등과 연결해야하는 등 발행절차가 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 복잡하다(동법 제16조).

선불전자지급수단형에서의 문제점은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충전한 금전은 소비자 명의의 금전이 아니라 간편송금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이는 간편송금업체가 소비자의 충전금을 별도로 예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경영지도 요건으로 미상환액이 자본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따라서 간편송금업체의 파산 등 위험이 소비자의 위험과 연결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제4절 자산관리

### 1. 로보어드바이저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단계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시 설명의무를 대면으로



이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상품의 확대에 제한이 있었다.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대면설명의무는 사업확장에 큰 제약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9일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을 공고하였고, 동년 6월 2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공시기간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공시 등을 실시한 시점이 2016년 10월 17일로<sup>154)</sup> 개정된 규정 시행일 즉시 비대면을 통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 표 21 ]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을 개정전과 개정안, 실제 확정된 규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표 21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개정전	개정안	개정후
<p>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154)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http://www.ratestbed.kr>) 참조.

개정전	개정안	개정후
<p>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다. 영상통화로 법 제 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p> <p>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p> <p>(1) 투자일임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일 것</p> <p>(2) 최근 2년 이상 (주)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일 것</p>	<p>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다. 영상통화로 법 제 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p> <p>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p> <p>(1) 투자일임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일 것</p> <p>(2) <u>최근 1년 6개월 이상</u> (주)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일 것</p>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코스콤에서 운영하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후 1년 6개월 동안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운용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다음 [ 그림 9 ]와 같은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

[ 그림 9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용 절차



\* 출처: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http://www.ratestbed.kr>)<sup>155)</sup>

심사는 사전심사 1개와 본심사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sup>156)</sup> 우선 운용전 심사의 경우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알고리즘의 합리성, 개인맞춤성, 포트폴리오 산출,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이 검증항목이다.

본심사는 포트폴리오 운용심사와 시스템심사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포트폴리오 운용 심사는 실제 자금을 최대 6개월간 운용하도록 하여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심사

155) <http://www.ratestbed.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80> 2018.10.23. 최종검색.

156) 심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http://www.ratestbed.kr>) 참조.

한다. 이때 운용자금은 원칙적으로는 업체의 고유자금으로 하되, 금융회사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보유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임원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주요 검증항목은 개인맞춤성, 합리적인 리밸런싱, 다계좌 동시관리, 법규 준수성이다. 시스템 심사는 보안성 및 안전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다.

본심사 종료 후 최종심의위원회에서 최종통과여부를 심의한다. 최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코스콤에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공시를 할 자격을 얻게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테스트베드의 내용을 정리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상통화 및 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의 판매가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함에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담합 예를 들면, 상품솔림이나, 플래쉬크래시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소비자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1개의 인공지능이 여러명의 소비자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각 소비자에게 최선이 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이 이루어져야 하나, 금융회사에게 보다 유리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자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즉,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 2. 상품추천서비스

일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상품추천서비스의 경우 법률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추천이 금융거래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단순추천인지 중개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상품추천서비스는 소비자가 추천상품을 클릭하면 링크를 통해 해당 상품의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하게 한다.

단순 추천이라면 추천서비스는 추천이 아니라 금융상품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개에 해당한다면 보다 상품추천서비스 사업자는 법률적 제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보험중개에 해당하며, 보험설계사자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현재는 광고에 가까운 추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기존의 일반적인 금융상품광고는 소비자의 재무상황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추천서비스는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 또한 허물어지고 있다. 일반상품 쇼핑물, 포털 서비스 및 SNS 상의 광고를 보면, 지역, 구매이력 등을 통해 맞춤형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제5절 가상통화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규제공백이 있는 상태이며, 현재 국회의원이 제안하여 계류중인 법안이 3개 있고, 민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독자적인 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각 법안별 연혁은 다음 [ 그림 10 ]과 같다.

[ 그림 10 ]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의 발의일자별 발의 연혁<sup>157)</sup>

구분	발의 법률안	발의	발의 일자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2017.7.31.
▼			

157)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 등록된 각 의안을 검색하여, 법률안의 연혁을 필자가 정리

구분	발의 법률안	발의	발의 일자
2	가상화폐법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욱의원 대표발의	2018.2.2.
▼			
3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2.6.
▼			
4	대한변협 가상화폐 관련 특별 TF	미발의	2018.2.27.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통화의 정의와 업종을 유형별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정태욱의원 대표발의안은 ‘가상화폐거래업’과 ‘가상화폐관리업’, ‘가상화폐보조업’을 구분하고, 금융위 인가 사항과 시장진입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담은 특별법으로 발의되었다.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안은 가상통화에 관한 입법화를 위한 첫 번째 발의안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 표 22 ]와 같다.

[ 표 22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sup>158)</sup>

개정 대상	주요 내용	해당 조문
가상통화 정의	교환의 매개수단/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	안 제2조제23호 신설
가상통화 취급업자 유형	가상통화매매업	안 제2조제24호 가목 신설
	가상통화거래업	안 제2조제24호 나목 신설
	가상통화중개업	안 제2조제24호 다목 신설

158) 김명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 『Legislative ISSUE BRIEF』vol. 23, 한국법제연구원, 2017. 11, 4면의 표 재인용;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인용하였음.

개정 대상	주요 내용	해당 조문
	가상통화발행업	안 제2조제24호 라목 신설
	가상통화관리업	안 제2조제24호 마목 신설
가상통화 취급업 인가	인가 요건	안 제46조의3 신설
	인가 절차	안 제46조의4 신설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가상통화예치금 별도예치	안 제46조의5 신설
	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안 제46조의6 신설
	설명의무	안 제46조의10 신설
가상통화 취급업자 행위제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안 제46조의7 신설
	자금세탁행위 금지	안 제46조의8 제1항 신설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	안 제46조의8 제2항 신설
	거래방식의 제한(다단계 등)	안 제46조의9 신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9조제1항 제5호, 제6호 신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제4항 신설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1조 제3항 제13호 신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유형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인가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무를 규정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가상통화”의 개념을 확정하여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상통화”에 대하여 투자대상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구조로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발행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활용기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형태의 개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가상통화 취급업자 유형을 업태별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각 업태별 인가요건이나 의무의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59)</sup>

이후, 정병국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 방식을 취하였으며, ‘암호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매매·거래·중개·발행·관리 업무를 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의 ‘암호통화취급업’을 정의하고, 관련 진입요건 및 영업행위 규제를 설계한 점이 특징적이다.

대한변협안<sup>160)</sup>은 대한변협이 조직한 가상화폐 관련 특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한변협안의 특징은 ICO와 관련하여 “가상화폐발행업”을 정의하고 있어서 특징적이며, 가상화폐발행업을 등록제로 하고 있다.

## 제6절 인 증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기(금융실명법 제3조)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인 증은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지명의로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 1. 개인의 경우

159) 김명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 『법제이슈브리프』 vol.23, 한국법제연구원, 2017. 11, 5면.

160) 김동주·조장근,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정병국 국회의원, 대한변협,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 자료집, 2018.2.27.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금융거래시마다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체결 시에만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이후 거래에서는 접근매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그러나 앞서 간편송금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거래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본인인증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안침해의 경우 다음 [ 표 23 ]과 같이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 표 23 ] 보안침해의 유형 및 특징

유형	특징
악성코드 (Malware)	고객 PC 등으로 악성코드를 심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는 공격
피싱/파밍 (Phishing/Pharming)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위조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유형	특징
사회공학적 공격 (Social Engineering)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신분도용 (Identity Theft)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분을 가장하여 불법거래를 시도하는 공격
CNP공격 (Card Not Present)	불법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카드위조 (Counterfeit)	CD/ATM의 스키밍(Skimming) 등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여 카드를 위조하는 공격
내부자 공격 (Internal)	금융회사, 금융 관련 아웃소싱업체 등의 내부자에 의해 소비자 정보가 유출되는 공격
전산장애 (Computer Problem)	디도스(DDoS)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지연시키거나 마비시키는 공격

\* 출처 : 금융보안연구원,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2012

보안침해는 하나의 유형으로만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침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악성코드 등의 통해 알아낸 소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분도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등이 복합적 보안침해라고 할 수 있다.<sup>161)</sup>

문제는 오늘날 보안침해가 발생한 경우 복합적인 보안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해킹) 등의 경우 금융

161) 보안침해의 유형별 사례 및 공격시나리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보안연구원,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2012. 참조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사전에 체결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면책받는다. 실무상 대부분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면책약관을 약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면책약관이 존재하더라도 금융회사등이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킹등에 의한 거래하고 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인증된 거래로 인지되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킹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금융회사 등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게 되고, 결국 해킹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인증방식을 다양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고발생시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제7절 Reg-Tech

레그테크는 금융회사의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내부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을 제외한 다른 금융관련 법률에서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관련 업무는 의사결정권한을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 나. 내부감사업무
- 다. 위험관리업무
- 라.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위의 규정에 따르면 레그테크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은 금융회사 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그테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금융회사 등이 부담한다.



## 제4장 규제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제1절 서 설

제2절 금융안정 관련 금융규제 체계의 재설계 가능성

제3절 유형별 핀테크 관련 금융법제 개선 방안





## 제4장

# 규제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제1절 서 설

규제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추종하기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정책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를 변경하기도 하고, 사회변화에 적합하게 규제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체계는 사회마다 다르게 형성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법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규제 체계로 발전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에 따라 규제의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과도한 규제이 적용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 규제 체계가 금융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온 것은 하루이틀의 현상이 아닌 상황이며,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산업계나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규제체계에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금융 규제 체계에 영미권 국가 등과 같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와 같이 규제 체계에 대한 원론적인 변화가 가능한지, 이러한 규제 체계의 재설계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지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여 이를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법제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금융안정’ 평가요소에 편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본다면,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 즉 금융관련 규제 및 금융산업에 관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규제에 대한 신뢰는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소비자신뢰를 ‘금융안정’의 평가요소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회의적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신뢰는 사건의 발생유무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변수로서 이를 금융안정성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산입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는 금융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 보다는 그 결과에 집중하는 측면이 강하며 해당 사건당사자 이외의 금융회사로 일반화 되기도 하는 등, 소비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정확한 집계를 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는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 등을 설정하는데에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는 규제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는 금융안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신뢰가 낮은 금융분야에 대한 감독 및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행정규제기본법은 제8조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환류체계라고 볼 수 있다. 규제의 유효성 평가 및 조치 절차에 대해서는 각 중앙부처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규제의 목적 및 소관부처에 따라 규제환류체계의 구조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있다.

현재 금융분야에서의 규제환류체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의 유효성분석 및 조치를 위한 절차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규제 변화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유관부서, 금융연구원 및 자본시장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사업자, 학계 등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소비자 또는 소비자대표의 참여는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를 ‘금융안정’ 평가기준으로는 하지 않고, 금융안정 관련 지표 등을 해석하는 요소로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 확립과 금융소비자 참여 제도화를 통하여 시장참여자로서의 금융소비자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절 금융안정 관련 금융규제 체계의 재설계 가능성

###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규제절약의 변화<sup>162)</sup>

#### (1)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 논의

그동안 역대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경직된 법령, 부처 이기주의와 보신적 관료주의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는데는 실패하였다. 예를 들어, 2013년 규제개혁위원회는 본격적으로 네거티브규제의 기치를 내 걸고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 597건, 2014년 27건 등의 저조한 성과를 보였고, 이에 대한 평가도 매우 박하였다.<sup>163)</sup>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다. 규제혁신을 위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이며,<sup>164)</sup>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좋은 공약”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sup>165)</sup>

162) 성희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 정책』 제24집제1호,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2018. 3. 131~161면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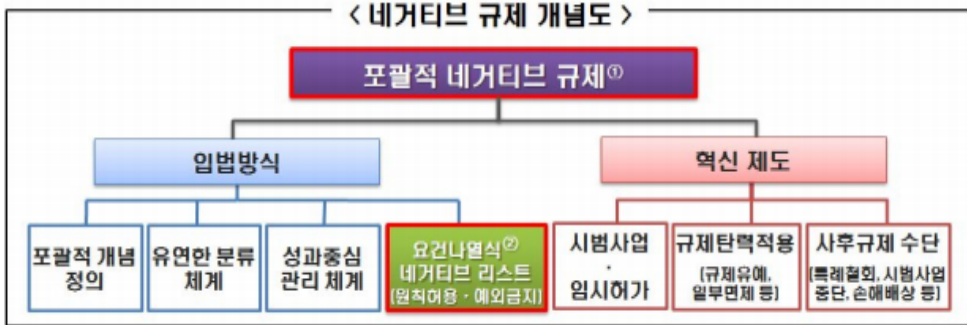
163) KCERN, “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 혁신”, 제27회 발표자료, 2016. 6. 14, 슬라이드 57면. [https://www.slideshare.net/K\\_CERN/kcern-27-4](https://www.slideshare.net/K_CERN/kcern-27-4) 참조.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양적으로는 단순 행정비용 절감일 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였고, 포지티브 방식과 별 차이 없었다고 한다. 질적으로는 사업 분야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였고, 안전·환경 등 일부 분야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KCERN, 위와 같음.

164) 대한상의,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은?”, 『대한상의 브리프』, 2017. 4. 24, 3면.

165) 뉴스핌, “[공약평가 설문조사] 문재인이 좋은 공약 1위...“이것 빼고 모두 허용””, 2017년 4월 28일자 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428000109> 2018.10.30. 최종검색) (“국내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가장 좋은 공약으로 꼽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

2017.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10. 19일 후속조치로서 확정, 발표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기존의 네거티브규제의 개념을 확장하여 ‘규제 샌드박스’<sup>166)</sup> 등 새로운 규제 혁신 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 그림 11 ]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개념도<sup>167)</sup>



특히, 2018년부터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상품의 유형에 적용할 규제의 확정을 위하여 i) 포괄적 개념 정의와 ii) 유연한 분류 체계를 기초로 한 입법방식을 취하는 한편, iii)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사후 평가·관리체계와 iv) 원칙허용-예외금지를 기초로 하는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등을 입법기술 상의 네거티브 규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혁신 제도로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사처(공수처)와 검찰수사권 분리, 4차 산업위원회 신설에 대한 공약 기대감도 높았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공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후보의 신산업 분야 제도개선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166) 중앙일보, “[이번 주 경제용어] 규제 샌드박스”, 2018년 1월 22일자  
 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2307540> 2018.10.30. 최종검색) (인터넷판)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샌드박스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167)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2017. 10. 2면.

실현하기 위하여, v) 임시허가와 vi) 시범사업 방식의 감독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vii) 규제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운용 과정 등에서 규제유예, 일부면제 등 규제의 탄력적 적용 방안을 채택하면서도, viii) 특례철회 및 시범사업 중단,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사후규제를 통하여 규제완화에 대한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변경 필요성 내지 규제 체계의 재설계에 관한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sup>168)</sup>

2017년 10월 19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추진방안이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38건의 전환과제가 발굴되었으며, 여기에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위한 포괄적 개념정의 과제 7건, 유연한 분류체계 13건, 네거티브 리스트 10건, 사후 평가·관리 3건을 비롯하여, 혁신제도로서의 규제샌드박스 5건이 포함되어 있다.<sup>169)</sup> 또한, 2018년 1월에도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와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 89건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방식을 통한 규제혁신을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과 4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특구법의 입법화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입법부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금융혁신지원법을 제외한 규제특례법들이 대거 통과되는 성과도 있었으며, 각 정부부처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에 대하여서는 각 세부 규제 방식 기능에 맞게 다음 [ 표 24 ]와 같이 입법 방식과 제도 운용의 두 유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168) <http://www.fsc.go.kr>

169)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2017. 10, 2~15면.

[ 표 24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안)<sup>170)</sup>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입법 방식				제도 운용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규제	입시허가	시범사업
				규제의 탄력적 적용	
				사후 평가·관리	

이와 같은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노력은 기술혁신에 따라 다양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이 기대되고, 이를 위한 ‘원칙허용, 사후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71)</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 관련 입법체계는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고,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서만 관련 규정들을 보완할 수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의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나 중국과 같이 법정입법권 외에도 수권입법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비하여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입법 원칙과 각종 규제 체계의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 관하여서는 협의의 네거티브리스트 규제방식을 포함한 사후규제 체계로써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강력한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규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70)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념도를 규제의 기능과 접근방식에 맞게 필자가 수정하여 재작성

171) 성희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 정책』제24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3.30., 131~158면; 최철호·김성배·김봉철, 『규제 법제의 근본적 전환 가능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산학협력단,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2015. 10. 1~180면; 윤석진·조용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15~125면; 윤석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관련 법리적 심화연구를 통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도출』,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12, 41~264면;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인·허가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12권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1, 317-341면; 황태희,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방식의 개선”, 『성신법학』제10호, 2011, 81~99면 등 참조

## (2) 금융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실현을 위한 법규범 체계의 고도화

FinTech와 같이 금융분야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의 금융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고, 기존의 입법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행위와 현상을 규범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FinTech 영역을 규율하는 법체계에 금융분야 법제에 대한 이해와 기술혁신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는 입법자와 수범자, 이용자, 전문가 간의 상호교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입법 과정과 해당 규제의 적용과정에서도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존에 추진되어 온 금융분야 네거티브 규제 관련 정책이나 관련 연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각 업별 규제혁신·규제혁파가 필요한 요소별 개정안 내지 제정안을 위주로만 평면적으로 관련 입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온 바 있다.

금융분야에서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에 병렬적으로 관련 규제 개정안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중심의 유연한 규제 설계를 통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다층적으로 설계하여 금융안정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신서비스 규제에 대한 입체적 접근을 통하여 패키징화 된 일련의 규제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입법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기술·신산업의 핵심은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기술 구현에 있으며, 주지하듯이 국내 입법체계의 특성상 관련 분야 규제혁신이 전제되어야만 금융분야에서도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상품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평면적으로 접근하던 규제 적용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신상품/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함으로써, 신상품/신기술 규제에 적합한 방식을 입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체적 규제 분석을 통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또한 다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행 규제들이 가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실마리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원칙중심 규제 설계가 가능한 부분들을 동시에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특히, 혁신제도로 분류되고 있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중에서도 입법방식 분류에 포함된 포괄적 개념정의 및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평가·관리의 내용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입법방식과 제도운용간 Matrix 규제 분석 방식은 향후 금융규제 체계의 재설계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의 다층적 분석 방식의 틀과 접근방법은 다음 [ 표 25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에 따른 각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법제 개선 방안은 제3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 표 25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의 금융안정 법제에 관한 다층적 접근틀<sup>172)</sup>

		금융안정 관련 업별 규제								개선안		
		입법 방식				제도 운용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임시 허가	시범 사업	규제 탄력 적용	사후 규제			
행위 규제 (P2P 대출)	입법 방식	포괄적 개념 정의	「..법」 제○조	「..법」 제○조							규정별 개선안	
		유연한 분류 체계		「..법」 제○조				「..법」 제○조			규정별 개선안	
		네거티브 리스트		「..법」 제○조	「..법」 제○조			「..법」 제○조			규정별 개선안	
		사후 평가·관리				「..법」 제○조	「..법」 제○조	「..법」 제○조	「..법」 제○조		규정별 개선안	
	제도 운용	임시 허가				「..법」 제○조	「..법」 제○조	「..법」 제○조	「..법」 제○조		규정별 개선안	
		시범 사업				「..법」 제○조	「..법」 제○조	「..법」 제○조	「..법」 제○조		규정별 개선안	
		규제 탄력 적용		「..법」 제○조		「..법」 제○조			「..법」 제○조		규정별 개선안	
		사후 규제				「..법」 제○조			「..법」 제○조	「..법」 제○조	규정별 개선안	
		개선안	규정별 개선안	규정별 개선안	규정별 개선안	규정별 개선안	규정별 개선안	규정별 개선안	규정별 개선안	규정별 개선안	규정별 개선안	금융안정 법제 개선안

17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각 금융안정 관련 핀테크유형별 관련 법제에 적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필자가 고안하여 작성한 표



향후에는 위의 [ 표 25 ]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의 입법방식과 제도 운용에 필요한 다층적 규제 검토를 통하여 규제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법제의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민관학+이용자(금융소비자)가 함께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도출해 나가는 한편, 혁신성과 편리성 등에 기반한 핀테크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의 마련에도 이러한 규제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핀테크산업 지원과 관리·감독에 대한 규제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철학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금융영역에 있어서 신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과거와 현재의 규제환경을 비교할 때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되고 있다.<sup>173)</sup> 즉, “과거 우리 금융시장의 발달 초기의 규제환경은 금융상품이 단순하고 영업활동 범위는 협소; 금융회사의 규모가 작고 업무가 단순;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능력이 미흡; 정부당국의 전지적 능력을 전제; 금융소비자 구제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분쟁이나 위법행위는 사전에 차단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1개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99개의 선량한 행위도 사전에 금지 등”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sup>174)</sup>

그러나,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관련 규제들이 정비된 현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이전의 규제환경과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의 설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을 기조로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상품의 정의 규정에서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반

173) 성희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 정책』 제24집제1호,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2017. 12, 140면.

174) 성희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 정책』 제24집제1호,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2017. 12, 140면.

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사후적 규제’와 같은 관리·감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sup>175)</sup>

특히, 가이드라인 등의 규제 적용 방식은 그림자규제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부담과 규제비용이 지적되기도 한다.<sup>176)</sup> 그리고, 지금처럼 형사벌과 행정벌이 위주가 되어 있는 과징금 위주의 사전적 제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의 실현에 어려움을 더한다는 평가도 있다.<sup>177)</sup>

한편, 비조치의견서 도입과정에서 검토된 법리적 문제점과 같이 규제혁신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정책당국의 담당자들에게 제도 운영상 혁신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판단 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부과되는 현상(감사 지적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적 개념정의와 유연한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 정책당국의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른 사후적 책임을 감면하지 않는다면, 제도 운영상 유연

175)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선물거래소들이 비트코인선물을 상장하자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들이 이를 중개하려 하였는데, 금융위에서 비트코인은 우리 법상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트코인선물도 우리 법상 허용되지 않으니 중개도 할 수 없다고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를 한 사례가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법령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 방식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MBN, “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 암호화폐 파생상품 기초자산 불인정”, 2017년 12월 6일자 기사([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405393](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405393)) 2018.10.30. 최종검색)

176) 성희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 정책』 제24집제1호,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2017. 12., 146면; EBN, “[국감 2017] 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철폐 외쳤지만...”, 2017년 10월 17일자 기사(<http://www.ebn.co.kr/news/view/913397>) 2018.10.30. 최종검색)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책임 회피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남발하고 있어 그림자 규제(비공식적인 행정지도)철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기조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 12개, 금감원 19개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김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금융위의 금융규제 개혁기조가 무너진 것 같아 큰 우려가 된다”며 “금융당국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이상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그림자 규제를 양산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77) 성희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 정책』 제24집제1호,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2017. 12., 147면; 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금융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4. 9., 9-10면은 전통적인 형벌 위주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원칙중심규제화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필연적이므로, 원칙중심규제화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는 비형사적 제재수단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판단을 유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일응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규제우산 아래에서 활동하며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은 혁신성과 편리성 등에 대한 자극이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업역에서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분야 참여자의 자격과 비율을 공평하게 조정함으로써 기득권화에 따른 제도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이나 임시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탄력적 적용 문제에 대하여서는 책임 귀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신산업 기금 조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되, 단기적으로는 업역별 공제회 내지 책임보험 가입 방식을 통하여 신산업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과실 책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같이 성과중심의 기능적 평가와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업계에 자율규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규제 수립 과정에 공평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로서의 이용자 내지 금융소비자도 규제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 개선에 동참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의 적용과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통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로서의 핀테크기업들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주면서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후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적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규제환류체계 : 민관학 전문가 및 금융소비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함께 규제 설계

규제환류체계와 관련하여 관련 제도화 필요성과 관련 법제화 방안을 검토한 선행연구로는 2016년 KDI의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보고서와 2017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등이 있다.<sup>178)</sup>

178) 구자현 외,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KDI, 2016.9., 204면; 김명아, 『금융

해당 보고서들에서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사후평가·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정책당국과 독립된 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참가이용자,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제도 개선 위원회’의 도입을 통하여 입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와 정책당국, 이용자로서의 금융소비자들이 규제샌드박스에 참가하여 얻은 경험을 입법 절차에 반영하도록 규정화 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 참가결과와 관련 조치결과에 대한 제도적 규제환류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 표 26 ]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 따른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의 단계별 운용 절차와 기대 효과를 정리한 표이다.

[ 표 26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 따른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의 제도화(안)<sup>179)</sup>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 따른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의 단계별 운용 절차 및 환류체계의 제도적 완성			
단계	수행 내용	독립성/전문성 확보	기대 효과
1	혁신제도 참가 신청		핀테크산업 발전
2	금융당국 심사 선정	[심사위원회]	참가기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
3	신청인과 금융당국이 함께 혁신제도 계획 수립 및 규제 설계		시장참가자와 금융당국이 혁신제도 운용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공유·분담할 수 있으며, 제도 운용에 따른 문제점의 발견에 유리하고, 관련 규제개선 입법안 마련과정에서 시장참가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될 수 있음
	[운영위원회]의 승인	[운영위원회]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통하여 금융당국의 책임은 완화되고, 신청자는 공정한 기준과 객관적 평가에 따른 시장참가 기회를 가지게 됨

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10., 256~25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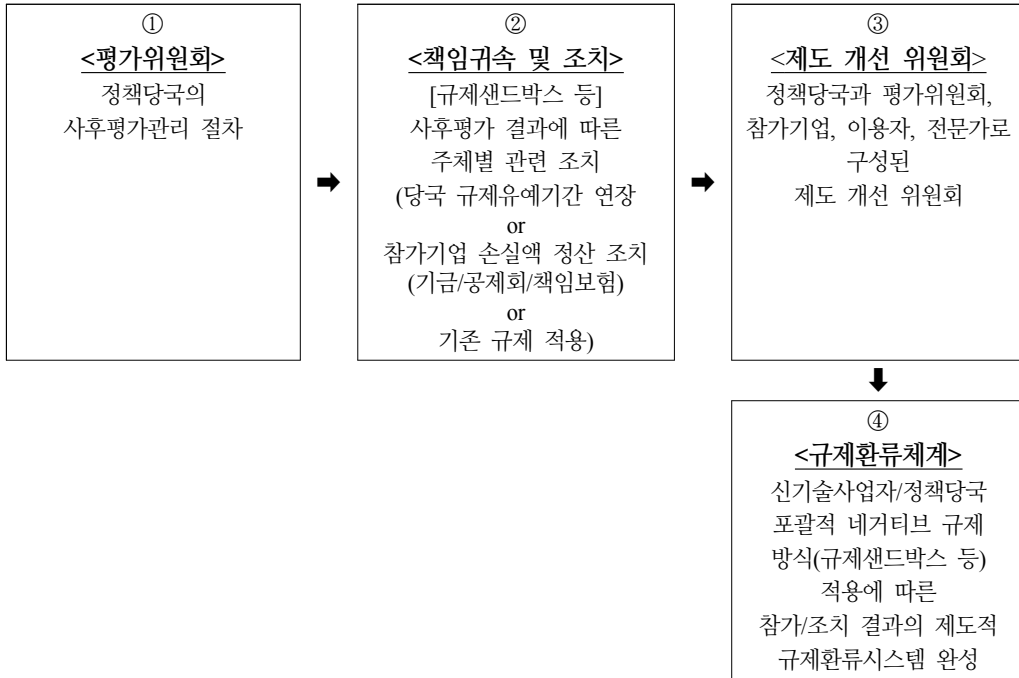
179) 김명아,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10, 307~308면의 표를 기초로 재구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 따른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의 단계별 운용 절차 및 환류체계의 제도적 완성				
단계	수행 내용		독립성/전문성 확보	기대 효과
4	규제완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유연한 규제 적용		[멘토단] 운영	금융당국의 감독과정에서 각 핀테크기술별로 적합한 적정수준의 규제와 감독조치에 대하여 멘토단이 자문의견을 냄으로써 금융당국 및 참가기업, 금융소비자 등의 관련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책임 경감
5	핀테크서비스 구현 및 소비자 보호조치 발동의 판단 -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시범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금융당국과 핀테크기업, 금융소비자 간 지속적인 교감을 이룸으로써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규제'로서가 아니라 '안전'과 '규제개선 대상 검토'와 '법제화 준비 과정'의 측면에서 가능
6	종료시 금융당국에 핀테크기업의 최종보고서 제출 및 금융소비자의 평가의견 제시			평가기준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기준과 표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7	금융당국의 결과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담보되어야 함
8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감독 당국의 관련 조치	규제 유예 기간 연장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시 규제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요건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참가기업 입장에서는 테스트베드 적극 참가의 유인책으로 작용 가능하고, 금융당국의 담당자는 책임 면탈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해당 서비스의 재이용 여부를 판단하게 됨
		참가 기업 손실액 정산 조치	[기금] or [공제회] or [배상책임 보험]	소비자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공제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참가기업으로 전가되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나아가, 산업발전 관련 자원들을 활용하여 정책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참가기업의 손실에 대한 일정금액 보조도 고려할 수 있음(요건 충족시)
		기존 규제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른 혁신제도 적용의 혜택을 박탈하고, 엄격한 사후규제를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 따른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의 단계별 운용 절차 및 환류체계의 제도적 완성			
단계	수행 내용	독립성/ 전문성 확보	기대 효과
9	금융당국과 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 개선	[제도 개선 위원회]	금융당국과 평가위원회, 참가기업, 전문가, 금융소비자로 공평하게 구성된 제도 개선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혁신제도 운영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의 제거 방안 및 관련 입법안을 수립
10	핀테크기업/금융당국/금 용소비자 간 규제환류체계의 제도적 완성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단]	참가 신청부터 평가, 제도개선 단계까지 핀테크기업과 금융당국, 참가이용자(금융소비자) 간 꾸준한 교감을 유지하고,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각 운영조직의 멘토링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서의 혁신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금융 규제 관련 입법 절차로 제도화

그리고, 다음 [ 그림 12 ]는 실질적인 제도 운용의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핀테크 분야에 적용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규제환류체계 도입을 통한 시장참여자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하여 [ 표 26 ]에서의 절차보다 다소 간소화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 그림 12 ] 핀테크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적용과 규제환류체계 (예)<sup>180)</sup>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용상 필요한 규제환류체계의 설계뿐만 아니라 신기술 사업자/정책당국 담당자/금융소비자 모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에 따른 참가/조치 결과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환류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 규제환류체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서는 기존의 ‘전지적’ 감독당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입법작업을 수행하는 관리기능의 정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180) 김명아,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10., 307~309면의 규제샌드박스 운용 절차상의 규제환류체계 내용을 기초로 하여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적용에 따른 규제환류체계를 재구성.

### 제3절 유형별 핀테크 관련 금융법제 개선 방안

#### 1. 크라우드펀딩

#####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보호와 경제활성화라는 상반되는 보호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이슈이다. 투자위험과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의 경우 가장 연약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기업이, 투자자의 경우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는 일반투자자가 서로 직접 대면하는 금융수단인 것이다.<sup>181)</sup> 따라서 그 어떤 금융수단이나 기법보다 투자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와 투자 민주화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게 큰 힘이 되어 창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투자자들도 그동안 엔젤투자나 벤처투자자에게 국한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투자수단의 민주화를 이루는 측면도 있다. 결국 투자자보호와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는 제도 도입 당시에도 그렇고 향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처럼 충돌되는 보호법익의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진단하자면 경제활성화 보다는 투자자 보호 쪽으로 추가 다소 기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우선, 유사한 크라우드펀딩 유형이 P2P 대출의 경우 각종 사기 행위나 부실 문제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데 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가 잘 이루어졌다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입규제나 행위규제가 워낙 엄격함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증권형의 자금조달 규모가 P2P 대출형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P2P

181) 성희황,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8, 417~418면.



대출의 경우 누적대출액이 3조원에 달하지만 증권형의 경우 지난 2년간 총 조달금액이 500억원이 안된다. 이에 따라 게이트키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중개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든 영업 구조가 되어서, 건전한 중개업체 육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제 활성화와 자금조달 기능 원활화에 조금 더 역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상 문제점으로는 i) 발행인의 범위제한, ii) 총투자한도 제한, iii) 발행증권의 종류 제한, iv) 크라우드펀딩 이용 가능 업종 제한, iv)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대한 일반 금융규제의 적용, v)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 금지, vi)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미흡, vii) 유통시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발행인의 범위제한 완화

우선 발행인의 범위제한과 관련하여, 현재 자본시장법은 발행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정
자본시장법	제9조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구 분	규 정
	<p>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자. 다만,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p> <p>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p> <p>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p> <p>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p> <p>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p> <p>나. 중소기업이 1개 이상의 다른 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가목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p> <p>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자</p>
중소기업창업지원법	<p>제2조(정의)</p> <p>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발행인의 범위가 업력 7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력기준에 따라 발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발행증권의 종류 제한 완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권 종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3종류이지만(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 주로 발행되는 증권은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2종류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그 허용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2017년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계약증권을 펀딩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금융위원회에서 “기존에 발행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SPC를 활용한 이익참가부사채라는 복잡한 구조로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한 바 있다.<sup>182)</sup> 향후 금융위원회가 투자계약증권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발행된다면 금융상품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지 못하는 실무적인 요인으로 는 의무예탁제도를 들 수 있겠다.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투자자는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는 바,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대상증권을 「증권등예탁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양한 형태의 투자계약증권을 대상증권으로 일일이 정하여야만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사실상의 제약이 있는 것이다.

한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담당부처의 적극행정도 필요하겠다. 최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만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되는 증권이 예탁대상이 아닌 등록대상으로 변경된다면 실무상 발행증권의 다양화도 확보될 것이다..

## 3)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강화

현행 법규에서는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부분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부실책임의 주체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82) 한국경제, “투자계약증권이 뭐길래... 빨난 크라우드펀딩 업계”, 2016년 4월 16일자 기사(<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1604127646r&nid=910> 2018.10.30. 최종검색)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판단일 수 있지만, 사실확인 의무(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1)를 부담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책임주체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있는 중개를 위해서는 온라소액투자중개업자도 책임주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sup>183)</sup>

#### 4) 유통시장의 형성

현행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정에서는 유통시장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금의 회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면서 발행공시를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투자자의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유통공시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비상장기업의 증권에 관한 유통시장은 장외거래 등으로 제한적이며, 투자자들이 지분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 조기 회수의 통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이 채무증권 발행에 집중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sup>184)</sup>

#### 5) 총투자한도 개선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모든 기업을 합산하는 연간 총투자한도 규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 장치는 투자자 보호에 핵심적인 장치로서 투자위험을 관리하는데에는 탁월하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을 크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총투자한도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려면 모든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어야 하며 이 정보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집중으로 인한 정보관리의 위험과 검증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예탁결제원이 중앙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83)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0, 188면.

184)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0, 187면.

개선방안 제시에 앞서 외국의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별 한도만 두는 나라도 있고, 총투자한도만 두는 나라도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총투자한도와 기업별 한도를 같이 두는 나라들도 있는 등 입법례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로 참조하는 선진국들인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기업별 또는 총투자한도 어느 하나의 규제만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국의 투자자 연간 투자한도><sup>185)</sup>

유 형	국 가	투자한도
연간 총한도 + 기업당 한도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업당 2,500달러, 연간 1만달러
	스페인	기업당 3천유로, 연간 1만유로
	포르투갈	기업당 3천유로, 연간 1만유로
	이탈리아	개인: 기업당 500유로, 연간 1천유로
기업당 한도	독 일	1천유로
	캐나다 퀘벡주	1,500달러(신생기업용 클라우드펀딩)
	일 본	50만엔
연간 총한도	미 국	2,200달러 또는 연소득이나 순자산 중 더 적은 금액의 5%
	영 국	순투자가능 재산의 10%
	네덜란드	2만유로
	오스트리아	5천유로

185) 자본시장연구원(연구총괄 천창민 박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예탁결제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 3. 23, 98면.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현행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제도를 최초 도입하고 규제 사항도 복잡한 미국의 경우도 이 총투자한도의 검증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규제 부담이 별로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186)</sup> P2P 대출의 경우 개별 투자한도도 증권형에 비해 2배 규모이고, 총투자한도는 아예 없다는 점도 고려하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총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6)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대한 일반 금융규제 적용 예외 인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초기 업체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자기자본 5억원 규모의 영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체로 정의되어 있다. 다만 증권회사와 같은 일반 투자중개업체와 성격이 크게 다른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상 과도한 규제는 적용을 일부 배제하고 있다.<sup>187)</sup>

그런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외에도 다른 금융법들에 여러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법, 예를 들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실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들은 투자중개업자를 원칙적으로 증권회사와 같이 상당한 규모를 가진 업체를 전제로 하고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현행 금융규제가 영세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적용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sup>188)</sup> 이를

186) 장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 자료, 2017. 6. 17, 15면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총투자한도 규제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총액투자한도 제한에 대한 비판결과로 총액한도에 대하여는 간단한 확인서만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건별 투자한도규제만 남아있는 상황이며, 투자한도를 상회하는 개별 주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다. 성희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일감법학』 제2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0, 174면 또한 SEC는 “객관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이 총투자한도 준수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대신, 발행기업과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자기 확인을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증을 대신”하도록 하였다고 한 바 있다.

187) 예를 들어 지배구조 관련, 제117조의6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제117조의16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117조의7 “①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78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

188) 개별 금융법상 구체적인 부담은 장정은, 앞의 발표자료, 6-9면 참조.

개선하기 위해서 개별 금융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적용 배제 조항을 두거나 자본시장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89)</sup>

### 7)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 허용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대부분 회사의 경우 펀딩 이후 성장관리가 필요하고, 이들의 건전한 경영을 토대로 한 안정적 성장이 투자자보호의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중개업자의 경영자문업 영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sup>190)</sup> 현행 법은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경영자문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없다. (법 제117조의7 제3항).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금지의 기본 취지는 중개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규제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강력한 사전규제라는 점에서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중개업자 모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고 효익 창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클라우드펀딩을 도모하는 초기창업기업 중에는 1인 기업도 많을 정도로 극히 영세하고 소규모이며, 기업의 역량도 기술적인 면에 치중되어 경영과 법적인 측면은 외부 자문이 절실한 형편일 것이다. 따라서 규제 원칙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핵심적인 부당행위 방지 조항을 설치한 후 원칙적으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실제 부당행위 발생시에는 엄중한 제재를 통하여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일 것이다.<sup>191)</sup>

189) 장정은, 앞의 발표자료, 9-10면 및 자본시장연구원,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217-218면도 같은 의견.

190) 장정은, 앞의 발표 자료, 13면.

191)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20-221면은 구체적으로, 자문 행위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6개월 내지 1년 이전의 자문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클라우드펀딩 시에 관련 내용을 공시토록 하여 이해상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함.

## 8) 크라우드펀딩 이용 가능 업종 제한 완화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이용이 허용되는 업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열거적인 업종제한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이 필요한 건전한 업체도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sup>192)</sup> 동법 시행령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허용 업종을 제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고시로서 적극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자본시장법령 자체적으로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sup>193)</sup>

### (2) P2P 대출

P2P 대출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법률의 제정이다.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P2P 대출의 법적구조, 원리금수취권의 법적 성격, 중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현재 P2P 대출과 관련하여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은 박광온 의원안<sup>194)</sup>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법안 또는 자본시장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개형태의 법제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투자자금 신탁 또는 예치 등 대동소이하하다.<sup>195)</sup> 다만, 투자 및 차입한도, 자기자본대출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현행 P2P 대출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각 법률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제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192) 자본시장연구원, 203-204면 참조.

193) 자본시장연구원, 위의 연구용역보고서, 204면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금지 업종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함.

194) 박광온의원안은 P2P 대출중개를 ‘온라인대출중개’로 정의함

195)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서는, 기준하,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vol.6, 입법조사처, 2018., 11면의 [표5]에도 잘 정리되어 소개되어 있음.



다음의 [ 표 27 ], [ 표 28 ], [ 표 29 ]는 P2P 대출에 적용되는 각 규정별 내용을 비교한 내용이다.

[ 표 27 ] P2P 대출 증개 형태<sup>196)</sup>

구 분	증개 형태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간접대출형(원리금수취권매매 및 담보제공위탁형)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 의원안)	혼합형 * 법률안의 내용상 정의규정은 간접대출형을, 세부규정은 직접대출형을 규정하고 있음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의원안)	직접대출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안)	간접대출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안)	간접대출형 * P2P 중개업자가 직접 대출을 하고, 해당 대출에 관한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임

[ 표 28 ] P2P 대출 차입한도<sup>197)</sup>

구 분	차입한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없음

196) 각 규정 및 법률안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하여 작성

197) 각 규정 및 법률안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하여 작성

구 분	차입한도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 의원안)	- 개인 : 연간 1억원 - 소상공인 : 연간 5억원 - 법인 : 연간 10억원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의원안)	없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안)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안)	대통령령에 위임

[ 표 29 ] P2P 대출 투자한도<sup>198)</sup>

구 분	투자한도
P2P 대출 가이드라인	- 개인 : 업체당 2천만원(부동산은 1천만원으로 제한) 소득요건 구비시 4천만원 * 잔액기준 - 법인 : 없음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 의원안)	대통령령에 위임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의원안)	없음

198) 각 규정 및 법률안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하여 작성

구 분	투자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안)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투자자</li> <li>- 소득요건 미구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동일차입자 기준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li> <li>: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li> </ul> </li> <li>- 소득요건 구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동일차입자 기준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li> <li>: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li> </ul> </li> </ul>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5개 법률안은 각각 나름의 장점이 있어 현행의 규제공백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법안의 완결성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시간상 나중에 제안된 박선숙 의원안과 이진복 의원안이 P2P 대출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적합한 측면이 있다. 두 법률안의 접근법 측면에서 본다면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 P2P 대출의 적 혁신을 중시하여 P2P 대출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박선숙 의원안은 P2P 대출도 크라우드펀딩의 한 유형이고 이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자본시장법에 도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규제체계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이진복 의원안은 현재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법제도적으로 충실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출참가계약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의 증권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제거함으로써 P2P 대출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P2P업자의 자기자금 대출을 용인함으로써 대부업을 사실상 허용하고, 대부업에 따른 부담은 덜고자 대부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점도 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가지 고려할 점은 온라인연계금융업은 사실상 대부업인데, 일반 대부업자에 비해 특혜를 허용하는 것이 금융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일반 대부업자는 오직 자기자금으로만 대출을 할 수 있고, 사전에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사후에 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온라인연계금융업자는 자기자금으로 대출한 후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원리금수취권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는 자금조달 수단에 제한이 있는 여신금융업자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위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금융업에 있어서 거의 은행에 준하는 영업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sup>199)</sup> 이러한 특별한 혜택의 타당성 여부는 결국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냐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특기할 점은 현재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인 투자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박선숙 의원안의 P2P 대출에 대한 정의 조항을 보면,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권의 유형을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하고 있고,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에는 담보제공 위탁계약에 따른 수익권과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P2P 대출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 방식과 담보제공위탁계약 및 대출참가계약 방식에서 발생하는 증권의 유형을 모두 포섭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P2P 대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규제의 공백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박 의원안은 투자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안들과 달리 개별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차입자를 합산한 총투자한도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형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를 동일한 구조로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법안의 완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추가할 사항을 제시하자면 소액공모와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를 들 수 있다. 즉 법안은 단순히 소액공모

199) 성희철, 앞의 논문, 70면에 따르면, “은행이 아니면서 대출을 업으로 하는 자는 여신금융기관이고 이러한 여신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여신업(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한 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어 사채나 어음의 발행, 보유 유가증권의 매출, 보유 대출채권의 양도 등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고, 그 방법도 특정한 방법(특정 법인에 대한 양도만 허용되고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양도는 금지)으로 제한된다.”고 하고 있다.

규제를 P2P 대출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일한 차입자가 P2P 대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를 모두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재무상황이 우량하지 못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이처럼 과도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것은 향후 금융시장 교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두 법률안 모두 나름의 규제철학과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충분히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네거티브규제 체계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포괄주의 관점에서 보면 박선숙 의원안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P2P 대출 개념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고 있고 또한 규제의 공백을 제거하는데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진복 의원안은 "대출참가방식", "대출목적투자", "투자연계대출" 등의 개념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원칙적으로 대출참가에 의한 원리금수취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2P 대출이 현재는 원리금수취권 유형이 주류이긴 하지만 향후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개념 정의를 이와 같이 자세히 규정하면 유연성과 확장성이 떨어져 의 혁신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 개념 정의를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칙중심규제 원칙에서 보면, 박선숙 의원안은 일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상당부분 적용 배제함으로써 상세한 규정중심규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의 권유 수단이라든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 확인 사항 등에 세부적인 규제를 두고 있기는 한데, 이는 P2P 대출의 특별한 위험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고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 금융법의 일반적인 규제체계에 따라 보다 자세한 영업행위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법의 규제체계중 영업행위규제는 대표적으로 규정중심규제로 볼 수 있다. 선관 의무,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관리라는 일반적인 원칙과 이러한 원칙들이 반영된 많은 개별 조항들이 치밀한 그물망을 구성하여 영업행위의 자유와 혁신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다 보니 기존 금융법의 일반적인 체계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자율규제 원칙에서 보면, 박선숙 의원안은 다른 법안들이 두고 있는 자율규제단체로서의 협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혁신을 주창하고 향후 여러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로서의 P2P 대출을 고려하면 협회를 중심으로한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클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바람직하다. 이와 달리 이진복 의원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법정 자율규제단체로 하고 있고 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율규제에 핵심적인 기능인 회원에 대한 검사와 제재 기능이 법안상에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자율규제업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검사와 제재는 회원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으로 법안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후규제 원칙에서 보면, 양자 모두 민사·행정·형사적으로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완 의견을 제시하자면 업체의 영세성과 투자자들의 자기보호 능력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부실이나 사기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미국식의 중지명령과 같은 조치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인 투자한도에 있어서는 박선숙 의원안은 차입자별 한도와 총투자한도를 각각 설정하고 있으나, 이진복 의원안은 아예 언급이 없는 점도 큰 차이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시 영세한 기업과 자기보호 능력이 약한 일반투자자간 만남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한도는 크라우드펀딩의 핵심적인 장치로 간주되고 왔다. 따라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총투자한도를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바, 둘 것이면 박선숙 의원안과 같이 증권형과 P2P 대출 공히 동일한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P2P 대출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 문제나 한도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법률 제정시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P2P 대출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P2P 대출의 원리금수취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지 않고 대출계약에서 파생된 권리로 보고 있다.<sup>200)</sup> 그렇다면 논리상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견해에 따라 채무증권으로 보거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리금수취권 등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게 되면, 직접대출형의 경우 개인을 발행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를 흔들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간접대출형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발행인이 되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 자산운용업간의 규제차익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적·정책적 차원에서 본다면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금융안정 및 시장참여자 보호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도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 미국 등에서 투자한도 및 차입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위험의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도규제는 매우 경직되어 있다. 특히 투자한도의 경우 투자자개인마다 자산규모, 위험감수 정도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국가마다 한도규제가 상이한데, 보통 차입한도의 경우 보다 엄격한 반면, 투자한도는 보다 유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 P2P 대출 한도 규제>

국 가	차입한도 규제	투자한도 규제
프랑스	• 프로젝트당 1백만유로	• 건별 한도 1,000유로 * 개인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스페인	• 프로젝트당 2백만 유로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5백만 유로	일반투자자 • 건별 한도 3,000유로 • 연간한도 10,000유로

200) 박선숙 의원안의 경우 원리금수취권은 수익권 등 증권으로 보고 있다.

국 가	차입한도 규제	투자한도 규제
		적격투자자 • 한도없음 - 적격투자자요건 가. 기관투자자 나. 법인 : 자산 1백만 유로또는 매출 2백만유로이상 또는 자본 3십만유로 이상인 법인 다. 개인 : 연 수입 5만유로 또는 금융자산 1십만유로 이상
포르투갈	• 프로젝트당 1백만 유로	• 건별 한도 3,000유로 • 연간 총한도 10,000유로 * 증권형과 동일하며,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됨
일 본	• 규제없음	• 규제없음
미 국	규제없음	• 규제없음 * 증권발행규제가 적용되지만, 중개업자가 발행자이기 때문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적용되지 않음
영 국	• 규제없음 • 다만, 개인차입자의 대출규모가 25천파운드 이상인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	규제없음
중 국	• 개인 3.3천만원(2십만 위안) - 동일인이 다른 플랫폼도 이용하는 경우 총 합산 1백만 위안 • 법인 16.4천만원(1백만 위안) - 동일법인이 다른 플랫폼도 이용하는 경우 총 합산 5백만 위안	규제없음

\* 출처 :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정부위원회, 2018.

지금과 같이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고,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래구조에서는 한도규제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규정이 될 것이다. 다만, 차입자별, 담보별로



위험이 단절되어 있는 법적 구조에서 총액규제까지 필요한가라는 점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며, 총액한도보다 상품별 또는 차입자별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방식이 산업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차입자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필요하다. 현재 P2P 대출에서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심절차가 진행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없다. 실질적인 채권자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만기연장 등 대출조건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P2P 중개업자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P2P 중개업자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으나, 채권자집회는 매우 번거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이상 하지 않으려 한다. 상법 제490조 이하에서 사채권자집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채권자 및 채무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P2P 대출관련 법률 제정시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2. 지급결제

### (1) 간편결제

간편결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소비자의 책임부담 완화이다. 이는 인증과 연계된 문제로서 간편송금에서도 동일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인증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 (2) 간편송금

간편송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형 간편송금을 현재대로 유지할 것인가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한 이유는 물품 및 용역 등을 구매함에 있어 보다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물하기

등의 방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형 간편송금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편법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 간편송금이라는 개념에 보다 적합한 것은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화폐의 요건이 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사문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신생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요건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기업도 전자화폐로 전환할 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송금을 위해 충전한 충전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증표를 구매하는 것으로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위험이 소비자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가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최소 20%이상) 환급이 거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자금보호를 위해서 충전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액환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자산관리

#### (1)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경우 투자일임이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테스트베드의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테스트베드를 실시하는 이유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사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 협의과정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문제로서 상품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한 2017년 OECD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카르텔, 즉 인공지능에 의한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운용의 경우에도 디지털 카르텔에 관한 문제가 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조사가 필요하며,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차별이 없어야 한다. 투자일임은 개별 계좌를 중심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을 pooling하여 운용하는 자산운용과 차이가 있다. 각 개별계좌를 동일 포트폴리오로 운용하여 사실상 자산운용과 같은 개념으로 운용되는 경우 이는 자산운용으로 보아야 하고, 투자일임이라기 보다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 각 개별계좌를 동일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것을 투자일임으로 보면, 단주처리의 문제, 투자금액별 투자상품의 종류 등에 있어서 소비자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일임에서 발생했던 과당매매 등과 같은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2) 상품추천

상품추천서비스를 사실상 광고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상품추천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상품광고 및 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광고 등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상품추천에 있어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즉, 상품추천서비스 사업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경우 광고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상위에 게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품추천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도록 상품추천 가이드를 관련 부처에서 제시하거나, 사업자가 상품추천 메커니즘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상품추천서비스 사업자의 추천기준, 제휴금융회사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비제휴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이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추천상품을 선정하는 기준도 공시되어야 한다.

#### 4. 가상통화

가상통화시장은 여러모로 증권시장과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도 있다. 특히 중심이 되는 거래소 측면에서 보면,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매매체결업무)와 증권회사(인수와 주문 전달 업무), 예탁결제원(자산 보관업무), 증권금융(투자자금 보관 업무)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 가상통화시장은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의 기능까지 모두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통화 규제는 가상통화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가상통화거래소 만큼 중요하면서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부분이 발행에 해당하는 가상화폐공모(ICO)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가 중심이 되지만, ICO는 벤처 등 기술혁신 기업의 자금조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거래소 시장에서의 극심한 투기적 거래는 큰 관심을 끌었으나, ICO가 활성화된 것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어서 기존에 제시된 규제방안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제안이 없었다.

따라서 ICO를 중심으로 한 발행시장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유통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자면, 현재 제안된 안 중 체계성과 완결성이 가장 높고 평가되는 대한변협안을 토대로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방안을 보다 상세히 추가하고,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상통화 발행에 관한 대한변협안은 ICO를 발행업으로 보고 등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등록요건으로는 제6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일 것,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임원의 자격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이 있다. 그리고 발행 규제에

대한 더 이상의 조항은 없다. ICO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인데 지나치게 단순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교한 규제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못하면서 ICO의 긍정적인 면도 살리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공모규제를 참조하여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제를 수립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크다. 가상통화 공모(ICO)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기본적인 규제철학을 ‘규제적 공시주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행에 따른 공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를 형식적 심사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심사도 보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sup>201)</sup> 사전 승인을 요하는 규제주의와의 차이는 ICO 진행에 사전 승인이나 인가가 필요없다는 점이고, 원칙적으로 내용 심사가 없는 공시주의와의 차이는 공시서류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수행한다는 점이다.<sup>202)</sup>

다음으로 공시사항이 중요한데, 이는 가상통화 ICO가 기술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최대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프리세일에 참여한 전문투자자들의 일정 기간 매각제한, 모집자금의 제3자 보관·관리 등의 강제 조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투자한도 등이 있으면 투자자 보호 및 ICO의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sup>203)</sup>

발행 규제 추가에 이어,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 즉, 가상통화 거래소는 거래소, 증권회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특이성을 감안하여,<sup>204)</sup> 가상통화 상장에 대한 규제를 현행 처럼 거래소나 협회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율규제에 더하여 법령으로 최소한의 강제 규범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1) 성희철,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상사법연구』제37권제1호, 2018, 87면.

202) 위와 같음.

203) 위의 논문, 89면.

204) 위의 논문, 91-92면.

인수업자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기성이 농후한 가상통화의 상장과 거래중단(상장폐지)으로 문제 발생시 거래소의 책임을 물어 보수적인 상장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탁업자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가상통화를 별도의 콜드 월렛에 일정 비율 보관하도록 하여 해킹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전산 사고나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무과실책임을 가상화폐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sup>205)</sup> 유통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나머지 필요사항들은 이미 대한변협이 기존 제정안에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인 증

금융분야에서 무엇보다 확보되어야 할 것은 인증에 관한 보안이다.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 등의 보안시스템을 신뢰하고,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보안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현재 규제체계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인증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간편화됨에 따라 보안침해의 유형 및 경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보안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책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금융환경에서는 보안침해가 발생한 경우 접근매체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접근매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보안침해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ID로 다른 웹사이트에 가입 및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예. 페이스북 아이디로 P2P 대출 사이트 가입 등)도 보안침해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및 PC 등의 보안시스템의 최신화 등이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205) 이상, 위의 논문, 92면.

둘째, 보안침해 등에 관한 조사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금융거래에서 보안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를 위해서 소비자는 개인 PC를 제출하고,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관리방법 등을 진술하는 정도로 협조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접근매체로서 활용되고 있어, 보안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가 필수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경우 개인 PC보다 많은 양의 개인 정보가 누적되어 있어, 조사자를 통한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존재한다.<sup>206)</sup>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사건조사를 위해 제조사 및 OS 사업자의 시스템 접근권한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의 우려로 제조사 및 OS 사업자의 협조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안침해관련 조사를 위한 기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조사 프로세스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sup>207)</sup>

## 6. Reg-Tech

레그테크와 관련하여 현재 IT컴플라이언스 전담 IT 인력의 부족 현상은 컴플라이언스 부서 담당자가 IT인력에게 데이터보안과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를 일일이 전달하고 시스템 반영 등을 요청함에 따라 규제 변경시 적시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오는 측면이 있다.<sup>208)</sup> 해당 FinTech 유형별, 행위별로 관련 규제가 신설 또는 변경되면 레그테크 시스템에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규제에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금융회사나 FinTech 기업에 이를 의무화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정부나 금융감독당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레그테크 도입 세부 추진방향은, 인공지능을 통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레그테크 인프라를

206)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스마트폰은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조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Riley v. California*, 573 U.S. (2014)(No. 13-132)

207)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윤민섭,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보고서 15-21, 99면이하 참조.

208) 김용태,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금융감독원, 2017. 10.19., 14면.

구축하는 경우에도 은행, 금융투자업자,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주체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인프라를 통하여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sup>209)</sup>

레그테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위탁은 결국 비용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혁신형 FinTech 신생기업에 대하여 결국 경쟁제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생 Start-ups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 내지 금융주체의 다양한 업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것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용상의 진입장벽을 어떤식으로 분담할 것인가의 정책적 고려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도 앞에서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로서 레그테크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과정에서부터 금융당국, 감독기관, 다양한 금융주체, 금융소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그 단계별 문제점을 찾아내고 함께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각 구성원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기능하여 관련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과 이에 필요한 입법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한편, 레그테크가 도입되더라도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것인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종적인 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하므로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209) 김용태,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금융감독원, 2017. 10.19., 21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5장 결론



## 제5장

## 결론

영미계 국가나 중국 등과 같은 국가들의 규제 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를 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가능하나,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의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고, 포괄주의와 관련하여서도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의 정의 관련 규정 일부에만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열거식 규제(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은 규정중심규제나 후견적 규제 방식과 결합하여 우리나라 금융업의 빠른 성장에 긍정적 측면의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즉, 금융사업자의 역할 및 규모를 한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과 달리 열거식 규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분야에서의 후발주자로서 금융법체계의 도입자체가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기본유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영미 등 원칙중심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끊임없이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던 시기에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은 실물경제와 직접적인 관계 뿐만아니라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핀테크 영역에서 급속하게 그 서비스나 상품의 공급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는 이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재설계하여야만 될 정도로 기존 규제의 틀을 뛰어넘고 있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과거의 규제체계는 오히려 금융산업을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사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어서 규제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열거형 규제체계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금융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금융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중심규제, 사후규제 강화 등으로 규제변경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금융분야에 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관련 법제나 규제 체계는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규제 방식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법률의 제·개정 없이는 규제를 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재량에 따른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는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 등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는 규제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가 금융안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신뢰가 낮은 금융분야에 대한 감독 및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를 ‘금융안정’ 평가기준으로는 하지 않고, 금융안정관련 지표 등을 해석하는 요소로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 확립과 금융소비자 참여 제도화를 통하여 시장참여자로서의 금융소비자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융안정 법제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현행 금융 규제 체계에 대한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규제 체계 변경 가능성 검토와 함께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참여자로서의 금융소비자 지위와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논문 및 보고서 -

- 천창민, “클라우드펀딩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예탁결제원 연구용역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18. 3. 23.
- 구자현 외,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KDI, 2016. 9.
- 성희활,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상사법연구, 제37권 제1호, 2018.
- 성희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 정책 제24집제1호,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2017. 12.
- 성희활, ‘P2P 대출형 클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0권 제4호, 2016. 12.
- 성희활, “지분투자형 클라우드펀딩 규제에 대한비교법적 검토”, 일감법학 제2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0.
- 윤민섭,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보고서, 2015. 12.
- 윤민섭,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의 도입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
- 윤민섭, “非금융형클라우드펀딩의법적제문제와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한국법학원, 2014. 6.

-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2. 6.
- 김명아,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10.
- 김명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 『Legislative ISSUE BRIEF』vol. 23, 한국법제연구원, 2017. 11
- 기준하,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vol.6, 입법조사처, 2018.
- 인전타오, “중국 P2P 인터넷대출 시장 위기의 원인과 대응”,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8년 여름호, 자본시장연구원, 2018.
- 김동주·조장곤,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정병국 국회의원, 대한변협,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 2018. 2. 27.
- 서완석,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의 침해에 관한 유형과 법적 과제”, 상사법 연구 37권 제1호, 상사법학회, 2018.
- 김용태,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금융감독원, 2017. 10.19.
- 장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 자료, 2017. 6. 17.
- 이근영, “국내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동향 및 현황 분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6호, 2016. 4.
- 금융연구원(서병호·이순호), 『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 12.

최철호.김성배.김봉철, 「규제 법제의 근본적 전환 가능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산학협력단,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2015. 10.

정순섭 외 3인,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4. 9.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 2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 6. 27.

Whitaker, Beth Elise, Exporting the Patriot Act? democracy and the 'war on terror' in the Third World, Third World Quarterly, Routledge, 2007

.Fenwick, Helen, "The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A Proportionate Response to 11 September?", 65 MOD. L. Rev. 724, 2002.

Tomkins, Adam, "Legislating against Terror:the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Public Law」, 2002.

## - 보도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발표”, 보도자료, 2007. 10. 23.

금융위원회,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 「P2P 대출 가이드라인」2.27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2017. 2. 27.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보도자료, 2017. 3. 20.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2017. 10.

관세청,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보도자료, 2018.

1. 31.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보도자료, 2018. 2. 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 2018. 4. 26.

금융위원회,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8. 6.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투자업규정」개정·시행, 2018. 6. 27.

금융연구원, “중국 온라인 P2P 대출업체 파산 증가 및 시사점”, 『금융브리프』 27권 16호, 2018. 8.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18. 8. 1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톡(FinTalk)」, 업계와 금융감독원의 생생 현장토론, 2018.9 . 10.

금융감독원, “18.8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보도자료, 2018. 9. 28.

## - 뉴스 기사 -

중앙일보 뉴욕, “스타벅스 모바일 결제시스템 해킹 개인정보·돈 빼가는 사기행위 기승”, 2015. 5. 15.

한국경제, “투자계약증권이 뭐길래... 뿔난 크라우드펀딩 업계”, 2016년 4월 16일자 기사

KCERN, “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 혁신”, 제27회 발표자료, 2016. 6. 14, 슬라이드

- 대한상의,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은?”, 대한상의 브리프, 2017. 4. 2
- 뉴스핌, “[공약평가 설문조사] 문재인이 좋은 공약 1위...“이것 빼고 모두 허용””, 2017. 4. 28.
- EBN, “[국감 2017] 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철폐 외쳤지만...”, 2017. 10. 17.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5,700억원 대 육류담보대출 비리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2017. 9. 14.
- 중앙일보, “[이번 주 경제용어] 규제 샌드박스”, 2018. 1. 22.
- 세계일보, “‘원금보장’ 된다더니 부도처리...클라우드펀딩 '시한폭탄’”, 2018. 6. 20.
- 이투데이 2018년 8월 8일 기사, “대신증권, P2P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공방”, 2018. 8. 8.
- New 1, “P2P금융협회, 7월 누적대출 2조3256억...전년비 92%↑“, 2018. 8. 9.
- 한국금융신문, “루프펀딩 대표 구속...P2P업계 또다시 '먹구름' 끼나”, 2018. 9. 17.
- 조선일보, ““P2P 투자금 못받았다” 민원 올해 1200건”, 2018. 9. 18.
- 시사저널e, “대출 규모 커지는 P2P금융,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뒷전’”, 2018. 9. 19.
- 연합뉴스, “루프펀딩 투자금 300억 멋대로 쓴 건설업자 구속기소”, 2018. 9. 19.
- 서울파이낸스, “NHN페이코, '40兆' 간편결제 시장 전면전 예고”, 2018. 10. 12.
- 중앙일보, “[이번 주 경제용어] 규제 샌드박스”, 2018. 1. 22

-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 459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연구보고 18-11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 개선 연구

2018년 10월 29일 인쇄  
2018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 익 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8,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04-8 93360



---

**김명아(책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금융감독시험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2017)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2015)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인정 법제 개선 연구  
김명아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 788966 849048  
ISBN 978-89-6684-904-8  
93360  
2000'8 12